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8. 3. 29.(목) ~ 3.30.(금)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1
»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7
»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15
» 2018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23
»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1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81
» 청탁금지법 관련 주의사항 안내	93
»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107
❖ 제도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청렴 BLUE Belt 구축 / 병무청	
» 붙임자료	121
<붙임 1>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대상기관	123
<붙임 2>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참석자 명단	125
<붙임 3>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137
<붙임 4>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139
<붙임 5> KT대전인재개발원 건물배치도	140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2018년도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계획

» 목 적

- '18년도 위원회 추진 부패방지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기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청렴도·시책평가 실무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3.29.(목) 13:30 ~ 3.30.(금) 12:30
- 장 소 :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 참석 대상

- 270개 기관(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38), 광역자치단체(16), 기초자치단체(37), 시·도교육청(14), 국·공립대학(12), 공공의료기관(12), 공직유관단체(141)

» 주요 내용

- '18년도 청렴도·시책평가 방향 설명
 - 청렴도 측정모형 등 평가방향 설명
 -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지표 설명
- 기관별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

» 세부시간계획

< 1일차, 3.29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행사 안내	사회자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5~14:10 (5')	인 사 말 씀	부위원장
14:10~15:20 (70')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명 및 질의·응답	
15:20~15:30 (10')	휴 식	
15:30~16:0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① 청렴조사평가과	
16:00~16:30 (30')	② 심사기획과, 민간협력담당관	
16:30~16:50 (20')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발표 - 제도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청렴 BLUE-Belt 구축 -	병무청
16:50~17:00 (10')	휴 식	
17:00~17:40 (40')	③ 청탁금지제도과 - 청탁금지법 관련 개정 및 주의사항 안내	
17:40~17:50 (10')	종료(1일차) *숙소사용자 키수령(대강당 등록대)	
17:50~19:00 (60')	저녁식사 *식당운영 : 17:50 ~ 19:00	

< 2일차, 3.30 >

시 간 (분)	주 요 내 용	비 고
07:30~09:30 (120')	아침식사 및 숙소 퇴실(퇴실시 키 반납) *식당운영 : 07:30 ~ 08:30	
09:30~10:15 (45')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④ 부패영향분석과, 행동강령과, 청렴연수원	
10:15~11:00 (45')	⑤ 청렴총괄과, 공익심사정책과, 보호보상과	
11:00~11:10 (10')	휴 식	
11:10~11:4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⑥ 제도개선총괄과 -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1:40~12:10 (30')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질의·응답 ⑦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청탁금지해석과	
12:10~12:15 (5')	마무리 인사말씀	청렴조사평가 과장
12:15~12:30 (15')	참석자 설문지 작성	
12:30~	워크숍 종료(해산)	

공공기관 청렴도 개요

I 청렴도 측정의 의의

■ 청렴도의 개념적 정의

- ‘청렴도’란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행정 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청렴도’를 정의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

■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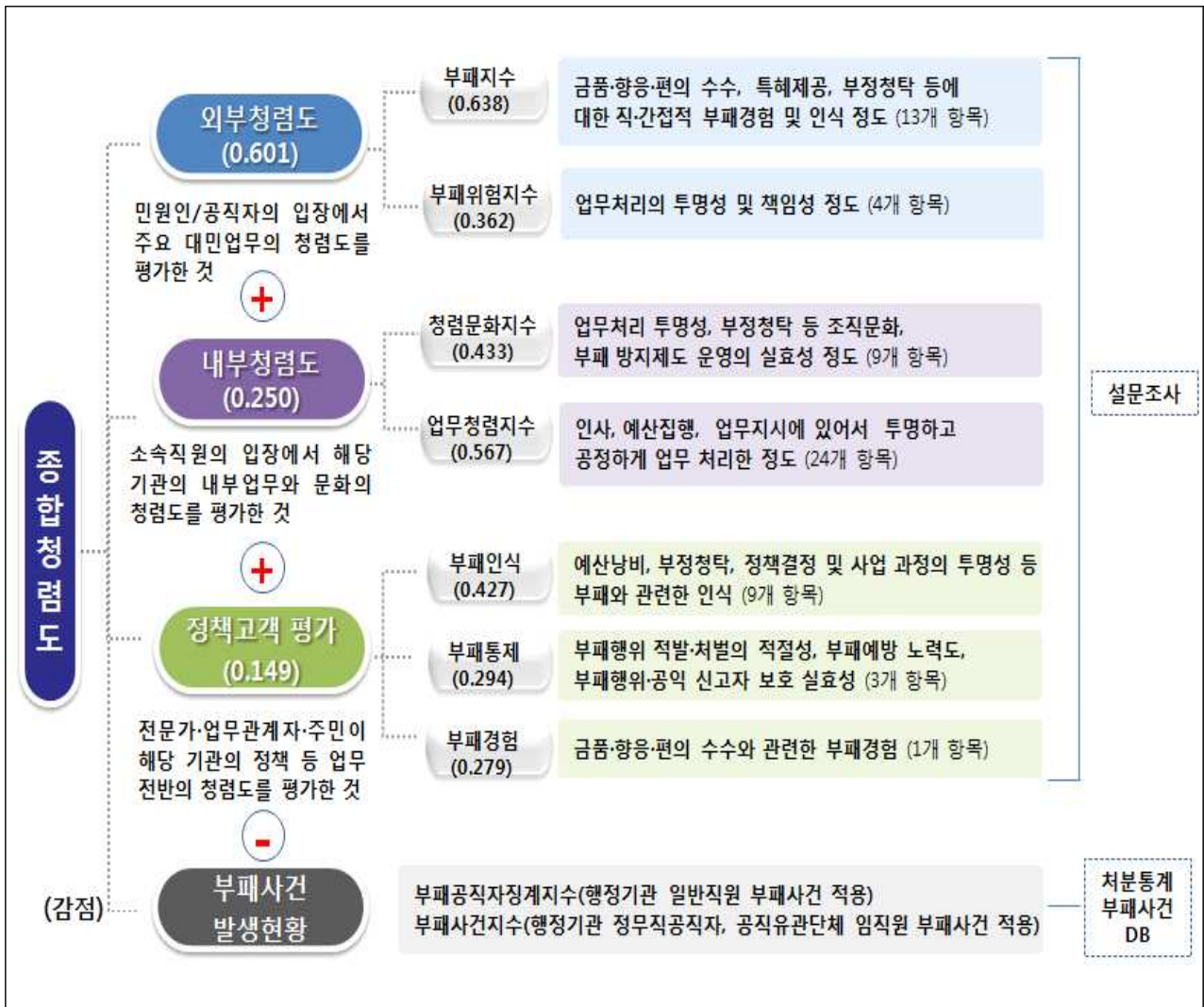
■ 청렴도 측정의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각급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반부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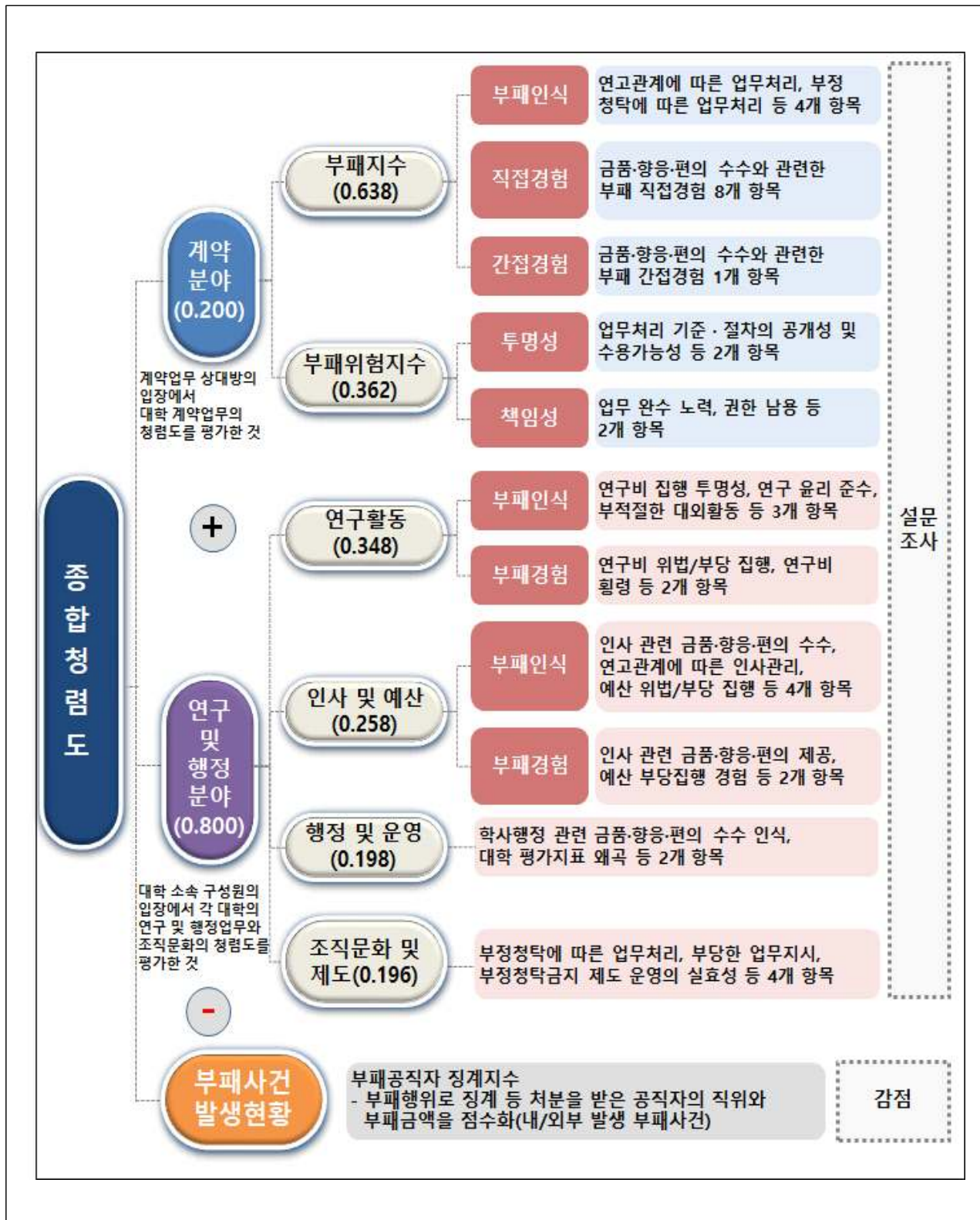
II 청렴도 측정 모형

■ 종합청렴도 모형(20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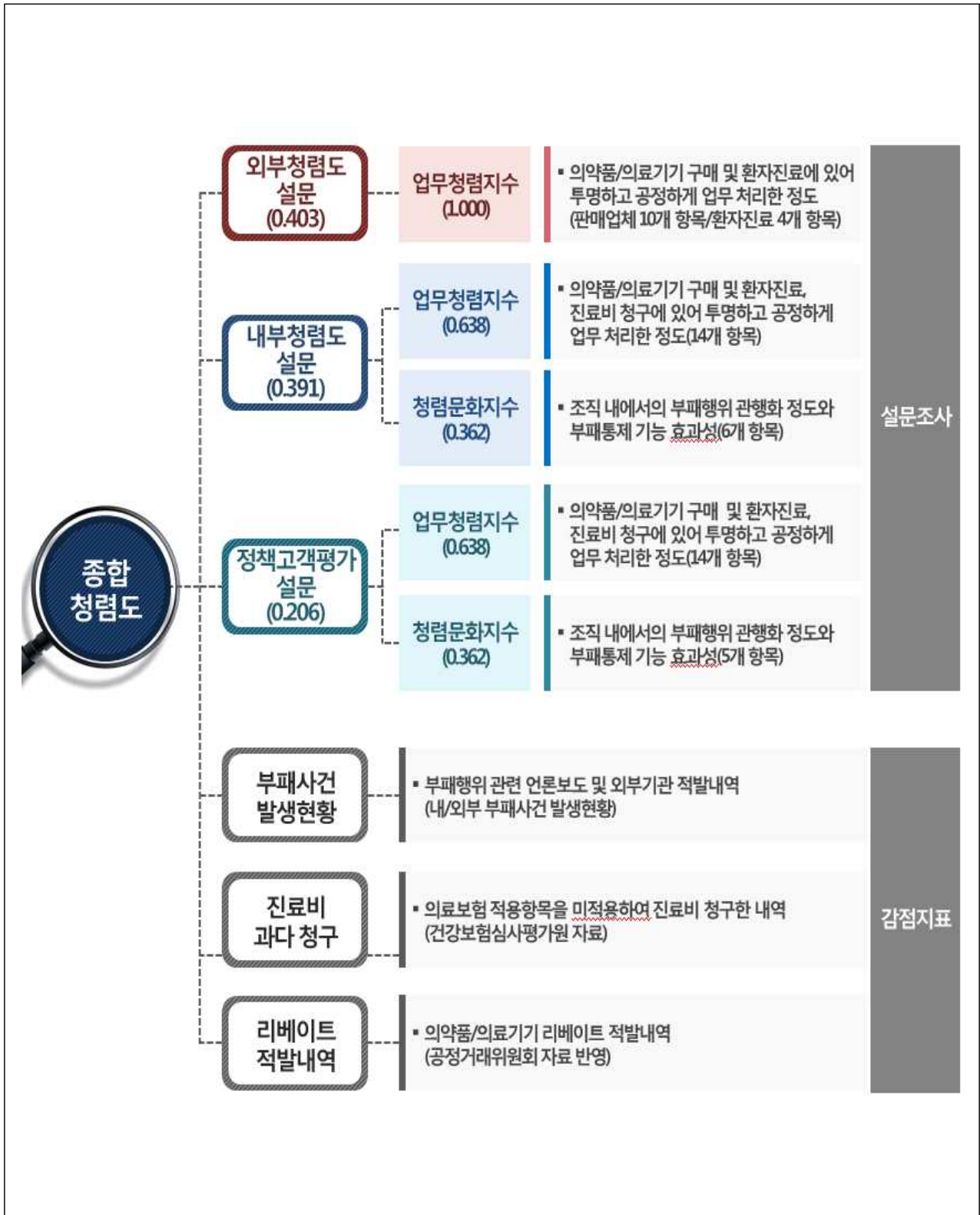


- ※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가중합산
- ※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가중합산
-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가중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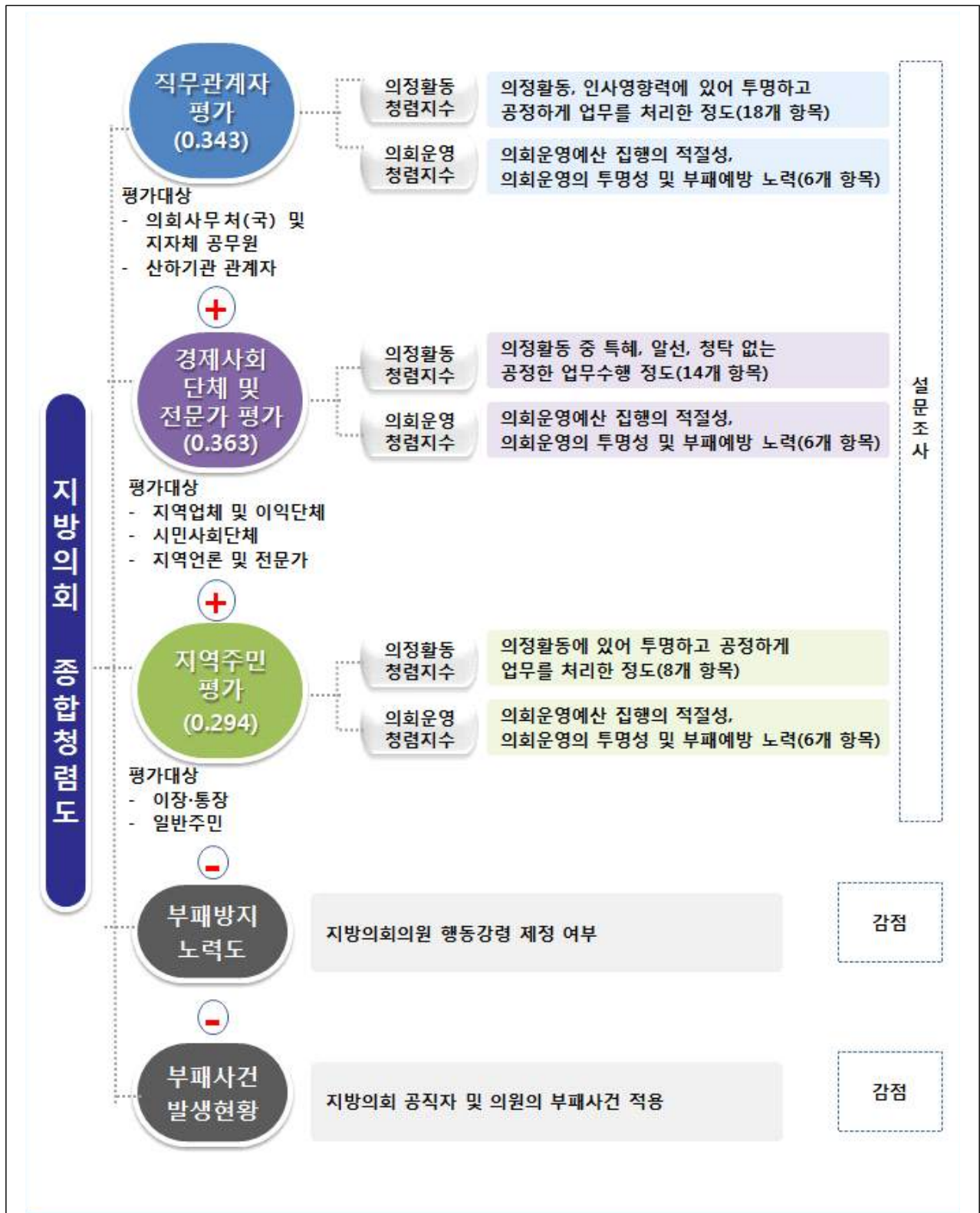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모형(2017년)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모형(2017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모형(2017년)



■ 측정 모형 연혁

연 도	측정 모형	측정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16년		733개
'17년		702개

※ 국·공립대학 청렴도는 2012년 이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는 2013년 이후, 지방의회 청렴도는 2013년 이후 특화모형으로 측정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 채용비리 등 부패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측정 대상기관 조정
- 전년도(702개)보다 3개 기관 증가한 총 705개 기관 측정(잠정)

■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을 추가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전수 측정
- (지방자치단체)'17년 측정범위 유지, 광역(17개), 기초(226개) 기관 측정
- (교육청) 교육청 전수 측정(17개), 지원청은 관내 지원청이 5개 이하인 경우 전수 측정, 10개 이상인 경우 3년 주기 측정(73개)
-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수사의뢰 기관 등을 추가하여 235개 기관 측정(전년대비 37개 증)
 - 채용비리 점검결과('18.1월) 수사의뢰, 징계요구가 있었던 기관 중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37개 기관 추가

■ 특화모형 적용 기관

- (지방의회)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18년 측정대상에서 제외
 - (공공의료기관) '17년 측정 대상기관 유지, 46개 기관 측정
 - (국공립대학) 10개 국립 교육대학과 채용비리로 징계요구가 있었던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추가, 47개 기관 측정(전년대비 11개 증)
- ※ 교육대학 : 서울, 경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진주, 공주, 춘천, 청주 교육대

< 2018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 기관	국공립 대 학
			광역시	기초	시도	지원		광역시	기초		
'17년	702	42	17	226	17	73	198	17	30	46	36
변동	+3	+2	-	-	-	-	+37	△17	△30	-	+11
최종대상 (잠정)	705	44	17	226	17	73	235	0	0	46	47

1 측정업무

■ 측정 업무의 발굴 및 조정

- 신규 측정 대상기관은 부패공직자 현황 등 부패사건 현황분석과 기관별 업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업무 발굴
- 현 측정 업무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높거나 부패경험이 없는 업무 등은 재검토하고, 국민안전 관련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 추가 발굴

■ 기관별 지방청 등 평가

- 지방청, 지사, 지역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세부측정 결과 제공 검토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2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부패와 직접 연관성이 낮은 설문항목을 삭제하는 등 설문을 간소화
- ‘업무지시 공정성’ 등 포괄적 설문문항을 구체화하고, 기관의 유형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패 사례가 제시되도록 보완

- 부패 직·간접 경험 설문 문항을 개선하여 응답의 타당도 제고
- 청렴도 측정이 기관에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악의적 응답 예상 민원인에 대한 반영방식 보완

■ 기관유형별 특화된 측정모형 적용

-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 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각 유형별로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3 감점지표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점수화
 - 처분자료 반영 기간('17.7월 ~ '18.6월)내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현황을 점수화
 -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 사건은 징계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영
- (부패사건지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 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
 - 징계 등 처분현황, 외부적발통보 건 등을 통해 확인한 부패사건도 보완적으로 적용
 - 사건지수 산정시 기관규모가 일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 부패사건 발생현황 중 기 감점한 건, 기관 자체적발건은 감점에서 제외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자체청렴도와 내부 평가(성과급인사 등) 연계로 청렴도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한 측정 명부의 체계적 점검(9~10월)

※ 오염 행위 발각시 높은 수준의 페널티 부과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예시)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 청렴도 측정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조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부패사건현황 자료 제출 누락, 허위사실 제출	• 부패사건현황 자료제출 누락 • 부패사건현황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III

향후 추진일정

■ 기관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18. 3~6월)

- 측정대상기관 선정 및 측정대상업무 관련 기관 의견 수렴(3~4월)
- 측정모형 및 설문지 설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4~6월)

■ '18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8. 6월말)

- 측정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18. 7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수령
-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

■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18. 8~11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8.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2018년도 청렴도 측정 절차

I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

■ 측정대상업무 선정 기준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외부청렴도에서 고려
- ① 대민·대기관 업무일 것, ② 충분한 측정대상자 표본 확보가 가능할 것, ③ 해당 기관과 측정대상자가 업무 접촉이 있을 것, ④ 기관의 대표적 업무, 부패개연성 있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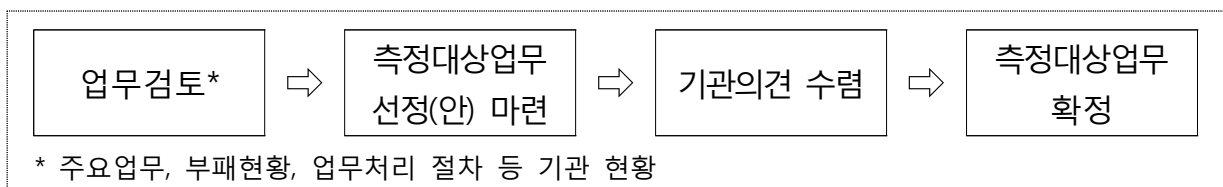
■ 측정대상업무 유지 및 변경 기준

- (유지)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거나, 부패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관련 예산 규모가 크거나, 해당기관과 접촉하는 국민의 규모가 커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업무
- (변경) 표본조사가 곤란한 업무 및 소관기관이 변경된 업무 등
※ 표본조사가 어렵더라도 기관의 핵심업무인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 실시

■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매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며, 확정된 측정 대상 업무는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통해 각급 기관에 통보
- 측정대상업무는 각급 기관의 주요기능,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 대민·대기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측정대상업무 선정 절차>



Ⅱ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대상자 및 명부 제출 범위

- (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의 자료 등 제출 요구권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외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측정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 또는 담당자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 '18년 청렴도 측정의 경우 '17. 7. 1일부터 '18. 6. 30일까지
- (내부청렴도)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으로 본부, 소속기관, 지방관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정책고객평가)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대상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출입기자, 보좌관, 학계 등), 업무관계자(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 명부작성시 주의사항

- 측정대상자 명부는 각 기관 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시계획의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기준을 숙지
- 부패공직자 처분자료, 감사수감내역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 징계, 훈계주의 관리대장, 징계의결서, 처분요구서 등은 권익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제출
- ※ (참고) '17년 명부 제출서식 : 하나의 엑셀파일에 시트별로 작성

1. 외부청렴도 : 1-1 외부청렴도 대상자 명부 표지, 1-2 외부청렴도 민원인, 1-3 외부청렴도 계약입찰참가자 명부
2. 내부청렴도 : 2-1직원명부, 2-2정원표
3. 정책고객평가 : 3-1전문가 명부, 3-2업무관계자 명단, 3-3전입직원 명부
4. 부패사건 현황 : 4-1부패행위 징계목록, 4-2주의 등 처분목록, 4-3감사수감내역, 4-4감사처분목록

III 청렴도 측정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등 수령
- 제출명부 상의 오기, 누락, 중복여부 등을 검증

■ 청렴도 측정 실시

- 외부청렴도는 기관 및 민원인 규모, 내부청렴도는 정원, 정책고객평가는 세부 정책고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규모결정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며, 전화조사로 진행
 - 내부청렴도는 측정대상자를 본부·소속기관별, 직급별 구성비에 따라 우선할당 후 표본추출하여 온라인(모바일, 이메일) 설문조사로 진행
 - 정책고객평가는 측정대상자를 유형별로 할당 한 후 표본추출해 전화 설문을 통해 측정 실시

■ 측정대상기관 현지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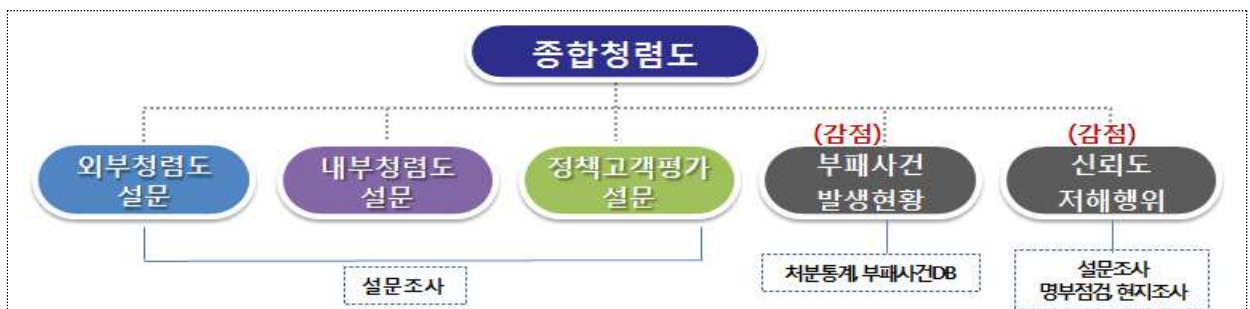
-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제재기준에 따라 감점 등의 조치
-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권익위에 제출한 측정대상자 명부, 부패공직자 관련 자료, 징계대장,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대장, 기관 인트라넷 및 시스템 열람 권한 등을 사전에 준비

IV 청렴도 측정 결과 집계 및 발표

■ 점수집계 방법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내부정책고객평가 설문점수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
 - － 외부청렴도는 외부청렴도 설문점수에서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내부청렴도 동일)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지수로 구성
 -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공직자의 직위·기관의 총 부패금액, 정원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 (부패사건지수) 전문가 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한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 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각 항목을 점수화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은 호의적 평가 유도 행위에 대한 설문응답, 표본 관리행위 등이 확인된 건을 반영

<종합청렴도 점수화 방식>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매년 12월 종합청렴도 및 외부·내부 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각 영역별 점수 발표

공공기관 청렴도·부패방지시책평가 홈페이지 공개

오 시 기 권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 대상기관은 측정·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공개실적은 법적 게재사항으로 각 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결과를 기한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 홈페이지 공개실적(예시)

<청렴도>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e main banner features a family under a tree with the text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Below the banner are four circular icons: 고충민원 (Gongchungminwon), 부패·공익신고 (Bupae Gongiksinho), 청탁금지 (Cheongtakgimji), and 행정심판 (Haengjeongsimpan). The "팝업존" (Popup Zone) on the right displays the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017 Integrity Score Measurement Results):

- 종합청렴도 1등급(7.90점)
- 외부청렴도 1등급(7.90점)
- 내부청렴도 2등급(7.90점)
- 정책고객평가 1등급(7.90점)

<부패방지시책>

This screenshot is identical to the one above, but the "팝업존" (Popup Zone) on the right displays the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2017 Anti-Corruption Policy Evaluation 1st Grade) result, accompanied by a trophy icon.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I 부패방지 시책 평가 개요

■ 개 념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평가 소지표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수립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발하여 2002년 최초 실시

■ 추진 목적

-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기관의 업무별 부패현황 진단이 목적, 시책평가는 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견인이 목적

■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 기관

- 중앙,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02년) 기초지자체('09년), 국공립대학('14년), 공공의료기관('15년) 등 평가

< '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256	24	12	17	35	16	11	12	129

Ⅱ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기본 방향

○ (대상기관)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확대

- 청렴도 하위 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 유도
- 채용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기관을 평가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방지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청렴도 상위 기관은 '18년도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 (평가지표)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여부,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주요 과제를 시책평가 과제에 포함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평가의 연속성, 기존 기관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을 포함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7년 청렴도 4, 5등급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추가 - 공직유관단체 중 채용비리 발생기관 추가
평가지표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등 금년도 청렴 정책의 중점사항을 새롭게 반영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 우수 시책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 기타,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큰 틀은 유지 - 기관이 이행해야 할 소지표 수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 예정
결과활용	■ 우수 사례를 공공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1. 평가 대상 기관

■ 선정 기준

- 시책평가의 연속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예년의 대상기준을 적용**하되,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 신입생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준 하향(3,000명 → 2,500명) 조정
 - ※ 전 중앙행정기관, 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인구 50만이상), 국공립대(신입생 2,500명), 공공의료(국공립 대학병원), 공직유관단체(150명, 3천억)
-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을 추가
- 청렴도 측정기관 중 **채용비리 발생기관**을 추가
 -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18. 1. 29. 발표)에 포함된 기관

< 평가 대상기관 선정 고려요인 >

▶ 대상기관 제외 기준

- 2년 연속('16~'17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발생이 없고, '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 이상인 기관
- '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 중 '17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발생이 없는 기관

▶ 대상기관 추가 기준

- '17년 종합청렴도 '4, 5등급'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공직유관 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인 기관
- 청렴도 측정기관 중 임직원수 150명 이상이면서 채용비리 발생기관
- '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기관 중 '18년 제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 시책평가 제외 및 추가 기관 >

구분	제외(16개)	추가(30개)
중앙부처	법제처(1)	여성가족부, 소방청, 해양경찰청(3)
지자체 (교육포함)	경상남도, 경기 부천시, 서울 은평구, 강원 원주시, 대구 수성구, 부산 북구, 서울 동작구,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9)	경기 파주시,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영등포구, 충남 아산시(8)
국립대학		인천대학교
공직 유관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주)(6)	경기신용보증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예금보험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8)

■ 대상 기관 (270개)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1, 24개), 청(중앙2, 14개)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3) : 여성가족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제외기관(1) :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37개)로 편성

※ 추가기관(8) : 경기 파주시,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영등포구, 충남 아산시
제외기관(7) : 경상남도, 경기 부천시, 서울 은평구, 강원 원주시, 대구 수성구, 부산 북구, 서울 동작구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4개)

※ 제외기관(1)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2개)

※ 추가기관(1) : 인천대학교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12개)

○ (공직유관단체) 예년의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하위기관 및 채용비리기관을 추가(141개)

※ 추가기관(18)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제외기관(6)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2018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시	기초				
'17년	256	36	17	35	16	11	12	129
변동	△14	+2	△1	+2	△2	+1	-	12
최종대상	270	38	17	37	14	11	12	141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17년 지표의 체계 유지

※ 기초자치단체 중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별도 그룹으로 평가 예정

○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종합계획, 청렴교육 의무화의 이행력 확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을 세부 평가지표에 반영

- 기관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자체 제도개선 및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청렴교육 이수율,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콘텐츠공모전 수상 실적 등
- 평가대상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하여 실질적 노력 유도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
 - ※ 제로미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 시책평가 결과 공개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 '17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 (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5월~6월)

■ 수범사례 발굴·확산 추진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반부패 우수시책, 사례 제공

IV 연간 추진 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4월 중순)

- 평가대상기관, 평가 지표 최종안, 보고서 제출 양식 등 송부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18. 5월말)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8. 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평가('18. 11~12월)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19. 1월)

별첨1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38개 기관

○ 부·처·위원회(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고용노동부	13	방송통신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14	법무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보건복지부
4	교육부	16	산업통상자원부
5	국가보훈처	17	식품의약품안전처
6	국무조정실	18	여성가족부
7	국방부	19	외교부
8	국토교통부	20	원자력안전위원회
9	금융위원회	21	중소벤처기업부
10	기획재정부	22	해양수산부
11	농림축산식품부	23	행정안전부
12	문화체육관광부	24	환경부

○ 청(1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검찰청	8	방위사업청
2	경찰청	9	새만금개발청
3	관세청	10	소방청
4	국세청	11	조달청
5	기상청	12	특허청
6	농촌진흥청	13	해양경찰청
7	문화재청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역자치단체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9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10	울산광역시
3	경상북도	11	인천광역시
4	광주광역시	12	전라남도
5	대구광역시	13	전라북도
6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7	부산광역시	15	충청남도
8	서울특별시	16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 37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 I 그룹(2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고양시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2	경기도 남양주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3	경기도 성남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4	경기도 수원시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5	경기도 안산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6	경기도 안양시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7	경기도 용인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8	경기도 화성시	19	인천광역시 서구
9	경상남도 김해시	20	충청남도 천안시
10	경상남도 창원시	21	충청북도 청주시
11	경상북도 포항시		

○ 기초자치단체 II 그룹(16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광주시	9	서울특별시 강동구
2	경기도 김포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3	경기도 파주시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4	경상남도 양산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경상북도 구미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6	광주광역시 북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	인천광역시 남구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	충청남도 아산시

■ 교육자치단체 : 14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교육청	8	서울특별시교육청
2	경기도교육청	9	울산광역시교육청
3	경상남도교육청	10	인천광역시교육청
4	경상북도교육청	11	전라남도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12	전라북도교육청
6	대구광역시교육청	13	충청남도교육청
7	대전광역시교육청	14	충청북도교육청

■ 국·공립대학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	7	서울대학교
2	경북대학교	8	인천대학교
3	경상대학교	9	전남대학교
4	공주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부경대학교	11	충남대학교
6	부산대학교	12	충북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경북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상대학교병원	9	제주대학교병원
4	국립암센터	10	충남대학교병원
5	부산대학교병원	11	충북대학교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41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1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	11	한국도로공사
2	국민연금공단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근로복지공단	13	한국산업은행
4	대한적십자사	14	한국수력원자력(주)
5	부산교통공사	15	한국수자원공사
6	서울교통공사	16	한국전력공사
7	중소기업은행	17	한국철도공사
8	한국가스공사	18	한국토지주택공사
9	한국국토정보공사	19	한전KPS(주)
10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II 그룹(3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	한국동서발전(주)
2	국립공원관리공단	19	한국마사회
3	국방과학연구소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금융감독원	21	한국산업인력공단
5	기술보증기금	22	한국서부발전(주)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3	한국석유공사
7	도로교통공단	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8	서울시설공단	25	한국원자력연구원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6	한국자산관리공사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	한국전기안전공사
11	신용보증기금	28	한국전력기술(주)
12	인천교통공사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지역난방공사
14	한국가스안전공사	31	한국철도시설공단
15	한국공항공사	32	한국환경공단
16	한국남동발전(주)	33	한전KDN(주)
17	한국남부발전(주)		

○ 공공기관 III 그룹(28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공무원연금공단	7	서울주택도시공사
2	국방기술품질원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	예금보험공사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	인천시설공단
5	부산환경공단	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	산림조합중앙회	12	(주)강원랜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3	중소기업진흥공단	21	한국산업단지공단
14	한국거래소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한국관광공사	23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광물자원공사	24	한국에너지공단
17	한국교육방송공사	25	한국예탁결제원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	한국무역보험공사	27	한국인터넷진흥원
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8	한국화학연구원

○ 공공기관 IV 그룹(3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시공사	16	한국국제협력단
2	경기신용보증재단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대한석탄공사	18	한국석유관리원
4	부산시설공단	19	한국소비자원
5	사회보장정보원	20	한국시설안전공단
6	서울신용보증재단	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2	한국연구재단
8	선박안전기술공단	23	한국장학재단
9	울산시설공단	24	한국전력거래소
10	인천환경공단	25	한국정보화진흥원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2	중소기업중앙회	2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8	한국한의학연구원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한국고용정보원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공기관 V 그룹(3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국제방송교류재단	18	한국광해관리공단
3	군인공제회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대구도시공사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대구시설공단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6	대전도시공사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대한체육회	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부산도시공사	24	한국세라믹기술원
9	부산항만공사	2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	우체국물류지원단	2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	인천도시공사	29	한국콘텐츠진흥원
14	인천항만공사	30	한국해운조합
15	전남개발공사	31	해양환경관리공단
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이행(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0.70)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0.30)	3(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50)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0.5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1.00)	7(1)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0.25)	11(2)
	3. 청렴문화 정착 (0.25)	3-1. 청탁금지 제도 운영(0.30) 3-2. 청렴교육 내실화(0.30)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0.40)	14(6)
C. 성 과 · 확 산	1. 청렴 개선 효과(0.05)	1-1. 청렴도 개선 실적(0.70) 1-2.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30)	2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확산(0.15)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0.40)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0.60)	6(4)
D. 감점		1. 부패사건 외부적발 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단위 과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배점	100																																									
평가 방법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 - 기관의 자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 - 단순 과제 나열식, 평가지표 열거식 계획이 아닌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여부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 - 금년도 시책평가 단위과제별 소지표의 개수를 고려할 때 최소 20개 이상의 세부계획 포함 < 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 ● 청렴 추진체계 구축 : 기관장 주도 청렴 관련 고위직 협의체 구축,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등 ● 기관별 맞춤형 계획 수립 : 전년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등 결과 분석과 정책여건에 기초한 취약 분야 도출 및 개선 방향 마련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내용 반영 ● 시책평가 과제 이행계획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60%;">세부 평가기준</th><th style="width: 5%;">배점</th><th style="width: 10%;">매우 우수</th><th style="width: 10%;">우수</th><th style="width: 10%;">보통</th><th style="width: 5%;">미흡</th></tr> </thead> <tbody> <tr> <td>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td><td>20</td><td>20</td><td>16</td><td>12</td><td>8</td></tr> <tr> <td>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td><td>10</td><td>10</td><td>8</td><td>6</td><td>4</td></tr> <tr> <td>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td><td>15</td><td>15</td><td>12</td><td>9</td><td>6</td></tr> <tr> <td>④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반영 여부</td><td>20</td><td>20</td><td>16</td><td>12</td><td>8</td></tr> <tr> <td>⑤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td><td>20</td><td>20</td><td>16</td><td>12</td><td>8</td></tr> <tr> <td>⑥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td><td>15</td><td>20</td><td>16</td><td>12</td><td>8</td></tr> </tbody> </table>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20	16	12	8	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10	10	8	6	4	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	15	15	12	9	6	④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반영 여부	20	20	16	12	8	⑤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	20	20	16	12	8	⑥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	15	20	16	12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20	16	12	8																																									
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10	10	8	6	4																																									
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	15	15	12	9	6																																									
④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반영 여부	20	20	16	12	8																																									
⑤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	20	20	16	12	8																																									
⑥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	15	20	16	12	8																																									
비고	- '18.5.31.까지 본 보고서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공문 제출(기타 첨부 활용) - 기관별 채점(권익위 총괄 담당자, 외부전문가) → 표준화 →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종 점수 부여로 기관 간 편차 확대 방지 예정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단위 과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배점	100												
평가 방법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30) -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추진계획 수립 시 계획한 내용들을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기관이 계산하여 제출한 백분율(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을 점수화) - 세부계획이 20개 미만일 경우 건당 1.5점 감점(예: 세부계획을 15건 수립하고 전부 이행 시 22.5점) -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 추진전략(과제)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이행 - 기재출한 <u>추진계획의 단위과제 및 세부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u>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u>공문번호 전부 기재</u> ※ 예시) 제출된 추진계획과 이행된 계획이 다르게 제출된 사례															
	<table><tr><th colspan="2">추진계획 제출</th><th colspan="2">계획 이행 여부 제출</th></tr><tr><td>청렴문화 정착</td><td>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td><td>청렴문화 정착</td><td>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td></tr><tr><td>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td><td> 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td><td>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td><td> 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td></tr></table> -> 총 9개의 과제 제출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과제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제출 시 과제 2개를 제출했지만 계획 이행 여부에서는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계획 이행으로 통합하여 제출하여 8개의 과제로 평가				추진계획 제출		계획 이행 여부 제출		청렴문화 정착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청렴문화 정착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추진계획 제출		계획 이행 여부 제출													
청렴문화 정착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청렴문화 정착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①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②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비고	-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반드시 명시 ·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우 ·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한 경우 · 권익위의 지표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등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단위 과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배 점	100						
평가 방법	○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점, 10)										
	- 범국가 차원으로 최종 확정된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급 기관별 단위과제(추후 별도 안내)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										
	* ‘반부패 종합계획’은 각급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정										
	<table><tr><th>구 분</th><th>배 점</th><th>최 대</th></tr><tr><td>▪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td><td>과제당 2</td><td>10</td></tr></table>			구 분	배 점	최 대	▪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2	10		
구 분	배 점	최 대									
▪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2	10									
	- ‘반부패 종합계획’ 확정 이후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행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시행평가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본 가점 적용에서 제외										
	* 기관별 단위과제 추진일정과 이행실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으로 인정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가점 미부여										
비고	반부패 종합계획 후속대책은 추후 별도 정기 이행상황 확인 예정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리더십 강화(3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15)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반영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10)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반영 ※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결과 자료 이용. 다만, 2018년 청렴도 측정 미 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 고위직 대상 청렴서약 제도 운영·제출(5) ※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3-2 청렴교육 내실화의 범위와 동일			
	②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활성화(50) ▷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20) 청렴업무 담당 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3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 대상 기관 수, 주요 산하기관·부패발생 기관·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 기초지자체는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5
	② 평가항목 구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 평가지표 중 정량적 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관에 맞게 평가			15
	③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 등)			10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중)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광역지자체 및 교육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및 교육지원청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평가 - 채용비리 발생 기관('18. 1. 29. 채용비리 점검결과 포함 기관)은 필수적으로 실시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 산하기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50) 청렴업무 담당 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청렴업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20) - 내부 인사지침 등에 인센티브 제도가 규정화 된 경우 기본점수 부여(10) -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평가(10)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10</td><td>7</td><td>4</td></tr></table> 《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평가 기준 》 ▪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 ▪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 내 위상 ▪ 인사가점 등 우대 조치 ▪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우수	보통	미흡	10	7	4
	우수	보통	미흡							
10	7	4								
비고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 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20) ※ 중앙행정기관 40, 세부 배점 표 안 괄호 표시 - 회의 운영 횟수 평가																																
	<table><tr><td>횟수</td><td>1회</td><td>2회</td><td>3회</td><td>4회 이상</td></tr><tr><td>배점</td><td>5(10)</td><td>10(20)</td><td>15(30)</td><td>20(40)</td></tr></table>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5(10)	10(20)	15(30)	20(40)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5(10)	10(20)	15(30)	20(40)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활동 결과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애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등을 말함(분과별 회의가 있는 경우는 쉼 분과가 각각 1회씩 회의한 경우 총 1회로 인정) / 화상회의 인정, 서면회의 불인정																																
	※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제도 운영 시 각 제도별로 회의 횟수를 모두 충족하거나, 직무 실적이 있는 제도의 회의 횟수를 반영																																
	※ 감사 참여, 자문의뢰, 위촉식, 모니터링 참관,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은 운영 횟수에 미포함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실적(40) ※ 중앙행정기관 60, 세부 배점 표 안 괄호 표시 -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 등 활동 실적 평가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배점</th></tr><tr><th>사례당</th><th>최대</th></tr><tr><td rowspan="2">제도 개선</td><td>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td><td>5(7.5)</td><td>10(15)</td></tr><tr><td>② 위 ①항에 따른 권고 등에 따라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경우</td><td>5(7.5)</td><td>10(15)</td></tr><tr><td rowspan="2">감사 참여</td><td>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한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 * 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청탁·공익신고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td><td>3(4.5)</td><td>6(9)</td></tr><tr><td>④ 위 ③항의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한 경우</td><td>3(4.5)</td><td>6(9)</td></tr><tr><td>협력 활동</td><td>⑤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회의, 교차감사 등 교류·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공식 회의 등 횟수를 사례로 인정)</td><td>3(4.5)</td><td>6(9)</td></tr><tr><td>공표</td><td>⑥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td><td>2(3)</td><td>2(3)</td></tr></table>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제도 개선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5(7.5)	10(15)	② 위 ①항에 따른 권고 등에 따라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경우	5(7.5)	10(15)	감사 참여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한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 * 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청탁·공익신고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	3(4.5)	6(9)	④ 위 ③항의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한 경우	3(4.5)	6(9)	협력 활동	⑤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회의, 교차감사 등 교류·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공식 회의 등 횟수를 사례로 인정)	3(4.5)	6(9)	공표	⑥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2(3)	2(3)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제도 개선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5(7.5)	10(15)																														
	② 위 ①항에 따른 권고 등에 따라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경우	5(7.5)	10(15)																														
감사 참여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한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 * 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청탁·공익신고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	3(4.5)	6(9)																														
	④ 위 ③항의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한 경우	3(4.5)	6(9)																														
협력 활동	⑤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회의, 교차감사 등 교류·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공식 회의 등 횟수를 사례로 인정)	3(4.5)	6(9)																														
공표	⑥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2(3)	2(3)																														
※ 실적 불인정(예시) - 법령 등에 따른 외부위원 심사 등(계약 관련 각종 심의나 평가 위원 활동 실적 등)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 - 본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시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③ 민관협의회 설치·운영(40)			
	가. <u>광역자치단체</u> 해당 지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 여부 및 운영 실적을 평가			
	구 분			배점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
	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0
	지역사회 청렴협약 체결			10
	※ 지표 설명			
	1) 조례는 민관협회의의 구성 및 위원 위촉, 회의 및 운영, 심의·의결 절차, 청렴문화 확산 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			
	2) 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반부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직능단체 등 4그룹 이상으로 구성			
	3) 청렴협약에는 청렴사회를 위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기관·단체들이 각각 이행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명시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경우도 인정			
	나. <u>기초자치단체</u> , <u>교육자치단체</u> , <u>공직유관단체</u> 해당 지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 및 청렴문화 확산 운동 실적 평가			
	구 분			배점
	민관협의회 참여			20
	지역사회 청렴협약 체결			20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 점	100																										
○ 민·관 협력 활동 실적(가점, 10) 가.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표 <table><tr><th>구 분</th><th>참여기관 · 단체</th><th>참여율</th><th>배점</th></tr><tr><td rowspan="4">지역 청렴협약 체결</td><td rowspan="2">산하기관</td><td>50% 이하</td><td>2</td></tr><tr><td>50% 초과</td><td>4</td></tr><tr><td rowspan="2">직능단체 등</td><td>3단체 이하</td><td>4</td></tr><tr><td>4단체 이상</td><td>6</td></tr></table> ※ 지표 설명 중앙행정기관이 산하기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학회 등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 (청렴사회를 위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기관·단체들이 각각 이행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명시)할 경우 * 직업이나 자격,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와 단체의 연합(의사회, 변호사회, 건설협회, 단체연합, 단체협의회 등 나. 평가 대상기관 전체 해당 지표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배점</th></tr><tr><th>사례당</th><th>최대</th></tr><tr><td>대표자 회의 운영 횟수</td><td>3</td><td>6</td></tr><tr><td>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td><td>2</td><td>4</td></tr></table> ※ 대표자회의 : 다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기회의나 운영위원회를 말함 1) 민간단체(참여기관의 1/5 이상)를 포함하여, 공기업·지자체·교육청 등 3그룹 이상 구성·참여 2) 운영규정이 있으며 3) 의사결정권자(부서장 이상)가 참여(부서원 참여 회의는 제외) ※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대표자 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기관 공동으로 영화,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캠페인, 축제, 퍼포먼스, 공모전 및 토론회, 공청회 등 ※ 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법정지원단체는 제외, 직능단체는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포함)						구 분	참여기관 · 단체	참여율	배점	지역 청렴협약 체결	산하기관	50% 이하	2	50% 초과	4	직능단체 등	3단체 이하	4	4단체 이상	6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대표자 회의 운영 횟수	3	6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2	4
구 분	참여기관 · 단체	참여율	배점																												
지역 청렴협약 체결	산하기관	50% 이하	2																												
		50% 초과	4																												
	직능단체 등	3단체 이하	4																												
		4단체 이상	6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대표자 회의 운영 횟수	3	6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2	4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노력과 각급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의 기관 간 편차를 고려, 양 실적 간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																																
	<table><tr><th rowspan="3">평가대상 세부과제수</th><th colspan="3">배점</th><th rowspan="3">합계</th></tr><tr><th rowspan="2">① 권고과제 이행</th><th colspan="2">② 자율적 제도개선</th></tr><tr><th>배점</th><th>제출 건수</th></tr><tr><td>0개</td><td>0점</td><td>100점</td><td>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2건)</td><td>100점</td></tr><tr><td>1~9개</td><td>10점</td><td>90점</td><td rowspan="2">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1건)</td><td>100점</td></tr><tr><td>10~19개</td><td>20점</td><td>80점</td><td>100점</td></tr><tr><td>20개 이상</td><td>30점</td><td>70점</td><td>자율적 제도개선(1건) C-2-2 반부패 시책(1건)</td><td>100점</td></tr></table>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 권고과제 이행	② 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 건수	0개	0점	10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2건)	100점	1~9개	10점	9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10~19개	20점	80점	100점	20개 이상	30점	70점	자율적 제도개선(1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 권고과제 이행	② 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 건수																													
	0개	0점	10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2건)	100점																												
	1~9개	10점	9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10~19개	20점	80점		100점																												
	20개 이상	30점	70점	자율적 제도개선(1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 세부과제에는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과제 포함(별도 통보 예정)																																	
※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에 따라 기관별 자율적 제도개선 제출 건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제도개선총괄과에 총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확인 필요																																	
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text{이행실적} = \frac{\text{이행완료 세부과제}}{\text{평가대상 세부과제}} \times (\text{해당기관 배점})$																																	
②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법·제도(법령, 사규 등)·시스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평가(건당 4페이지 작성)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 제출건수가 2개인 기관의 경우 2개 과제 각각의 점수를 평균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비고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중앙행정기관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 준공공영역(공무수행 민간인, 전문자격사, 공익법인 등)의 부패친화적 관행 ▪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부패 ▪ 사립학교 비리 ▪ 촌지수수 관행 ▪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공직유관단체	▪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 방만 경영(업무추진비 남용, 복지비 과다지출 등) ▪ 계약비리, 영업소 등 수익사업 운영 과정 비리 ▪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2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0		
	▪ 제도개선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제도 개선 내용의 효과성·지속성	20		
▪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20			
비고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행(가점, 5)											
	※ 중앙행정기관 1 그룹 해당 지표											
	- 권익위의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을 통한 해당 기관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노력 평가											
	가. 개선권고 건수 5건 이상인 기관											
	▪ 이행률 = $\frac{\text{당해 기관의 이행 개선권고 수}}{\text{당해 기관 전체 개선권고 수}} \times 100$											
	<table><tr><th>이행률</th><th>배점</th></tr><tr><td>75% 이상</td><td>5</td></tr><tr><td>75% 미만 ~ 60% 이상</td><td>3</td></tr><tr><td>60% 미만 ~ 50% 이상</td><td>1</td></tr></table>				이행률	배점	75% 이상	5	75% 미만 ~ 60% 이상	3	60% 미만 ~ 50% 이상	1
	이행률	배점										
	75% 이상	5										
	75% 미만 ~ 60% 이상	3										
	60% 미만 ~ 50% 이상	1										
※ '16~17년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를 대상으로 평가(금년도 평가과제 별도 송부)												
☞ 이행여부는 최종 공포된 법령안에 개선권고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단, 법제심사 확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안 제출 등도 인정)												
☞ 소관 부처에서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추진하였으나, 외생적 요인(입법철회, 법제심사 중 삭제, 국회 심의 중 삭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												
나. 개선권고 건수가 4건 이하인 기관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령 등(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한 실적 평가(기관별 세부평가서 2건 제출)												
※ 세부평가서 2건은 서로 다른 주제를 대상으로 작성												
☞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1개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및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평가항목에 중복 제출된 과제인 경우 불인정												
<table><tr><th>구분</th><th>배점</th></tr><tr><td>제출 건 모두 인정</td><td>5</td></tr><tr><td>제출 건 중 1건만 인정</td><td>3</td></tr><tr><td>제출 건 모두 불인정</td><td>1</td></tr></table>				구분	배점	제출 건 모두 인정	5	제출 건 중 1건만 인정	3	제출 건 모두 불인정	1	
구분	배점											
제출 건 모두 인정	5											
제출 건 중 1건만 인정	3											
제출 건 모두 불인정	1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자치법규, 사규 자율평가 개선(가점, 5) ※ <u>광역자치단체</u>, <u>기초자치단체</u>, <u>공직유관단체</u> 해당 지표 - 해당 기관 자치법규 또는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주제가 다른 자치법규 또는 사규 3건 이상 제·개정 완료 시 가점 부여(5점) ※ (인정기준) 자료입력 기간까지 제·개정을 완료한 과제 ☞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및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평가항목에 제출한 과제는 불인정 ※ (증빙방법) 개선과제별 세부평가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치법규(공포된 것) 또는 사규 화면 캡처 파일(또는 이사회 의결 공문, 일자가 표기된 규정 전문 등 사규 제·개정 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실적 증빙 < 실적 인정 기준(1건당) > <table><tr><th>구분</th><th>배점</th></tr><tr><td>개선 실적 3건 인정</td><td>5</td></tr><tr><td>개선 실적 2건 인정</td><td>3</td></tr><tr><td>개선 실적 1건 인정</td><td>1</td></tr></table>				구분	배점	개선 실적 3건 인정	5	개선 실적 2건 인정	3	개선 실적 1건 인정	1
	구분	배점										
개선 실적 3건 인정	5											
개선 실적 2건 인정	3											
개선 실적 1건 인정	1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 점	100						
평가 방법	○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체계 구축(가점, 10)									
	- 부패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관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 평가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강조사항(부패현안 신속 대응체계 구축 관련)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 여부(6)									
	$= \frac{\text{제출 과제 수}}{\text{대상 과제 수(위원회 선정·통보)}} \times 6$									
	☞ 기한 초과 제출 시 감점(6점 만점 점수에서 건당 1점 감점)									
	☞ 제도개선 조치계획 미제출 시 별도 감점(건당 0.1점, p.33 '감점' 영역 참조)									
	▪ 조치계획의 적정성(4)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4점</td><td>2점</td><td>1점</td></tr></table>				우수	보통	미흡	4점	2점	1점
	우수	보통	미흡							
4점	2점	1점								
【 평가기준 】 • 우수 : 관련 규정(시스템) 개선, 단속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추진 일정 수립 등 • 보통 : 교육 강화 등 일반적인 개선방안 수립 등 • 미흡 : 형식적인 조치계획 수립 등										
☞ 기관별로 제출한 제도개선 조치계획 대비 실제 이행여부는 내년도 평가 시 반영 예정										
☞ 본 지표인 '자율적 제도개선' 제출 과제와 중복 인정										
※ 부패현안 상시 제도개선 추진체계										
<table><tr><td>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 (권익위) • 부패사건, 언론보도, 국회 지적 등 • 과제선정 및 개선방향 통보 </td><td>⇒</td><td> 대책수립 (소관기관)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제출(1개월 내)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100일 이내) </td><td>⇒</td><td> 총괄·점검 (권익위) • 기관별 이행 여부 점검 • 평가 반영 등 </td></tr></table>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 (권익위) • 부패사건, 언론보도, 국회 지적 등 • 과제선정 및 개선방향 통보	⇒	대책수립 (소관기관)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제출(1개월 내)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100일 이내)	⇒	총괄·점검 (권익위) • 기관별 이행 여부 점검 • 평가 반영 등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 (권익위) • 부패사건, 언론보도, 국회 지적 등 • 과제선정 및 개선방향 통보	⇒	대책수립 (소관기관)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제출(1개월 내)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100일 이내)	⇒	총괄·점검 (권익위) • 기관별 이행 여부 점검 • 평가 반영 등						
☞ 과제 선정 시 권익위에서 소관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20)						
	-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1.16.) 내용의 반영 여부 평가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20		10		0		
	② 행동강령 자체교육 실시(20)						
	- 소속기관 포함 전 직원 대상 1회 이상 개정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집합 교육 실시 여부 평가						
	80% 이상 교육실시		80% 미만 교육실시		교육미실시		
	20		10		0		
	③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20)						
	구 분					배점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10		
▪ 외부강의등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 기관장에게 정식공문으로 보고					10		
※ 점검대상: 소속직원(소속기관 포함), 점검기간: '17년4/4분기 및 '18년1/4, 2/4분기 포함							
④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4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7회 이상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40		35	30	25	20	15	1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공공기관 V 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비고	-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 기관장과 감사가 상호 완전 독립되어 견제하는 시스템인 경우 기관장 대신 '감사'에 대해서 보고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관만 인정 - (지도·점검 실적) 他 복무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공문 및 첨부문서 포함)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 ※ 기관별로 실시하는 단순 보안점검은 불인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부패행위자 자체적발(40)																			
	- 정원 대비 자체적발 실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점수* ▪ $\frac{\text{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sqrt{\text{기관 정원}}} \times 100$																			
	<table><tr><td>구 분</td><td>배점</td><td>구 분</td><td>배점</td></tr><tr><td>20% 이상</td><td>40</td><td>7% 이상</td><td>28</td></tr><tr><td>16% 이상</td><td>36</td><td>7% 미만</td><td>24</td></tr><tr><td>10% 이상</td><td>32</td><td>0%</td><td>20</td></tr></table>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20% 이상	40	7% 이상	28	16% 이상	36	7% 미만	24	10% 이상	32	0%	2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20% 이상	40	7% 이상	28																	
16% 이상	36	7% 미만	24																	
10% 이상	32	0%	20																	
- 단, 대상기간 동안 부패행위에 대한 외부적발이 없는 기관은 추가 점수(4점) 부여																				
※ 기관별 자체적발 강화 노력이 중점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 부패공직자 :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 행위자																				
《 *자체적발 점수 산식 》																				
▪ 가중 계산된 자체적발 처분 건수(인원수)의 총합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종류에 따른 가중치																				
- 징계(×3), 처분(×1)																				
[예시] (견책 2명×3)+(훈계 3명×1)=9																				
※ 음주운전, 성희롱, 복무 위반 및 업무과실 등 단순 행위 제외																				
②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40)																				
-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에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실제 적용했는지 여부를 평가																				
※ 자체적발, 외부적발 구분 없이 금품, 향응수수 관련 부패사건이면 해당함 (공금횡령 등 제외)																				
비 고	1. ①② 대상기간 : '17. 11. 1 ~ '18. 10. 31. 기간 내 처분																			
	2. 처분유형 : 부패행위 처분확정일 기준 (당연퇴직,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으로, 단순 시정조치 등 제외)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table><tr><th>구분</th><th>적용 기준*</th></tr><tr><td>공무원</td><td>‘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td></tr><tr><td>공직유관단체 임직원</td><td>‘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td></tr></table>					구분	적용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구분	적용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감경 사례 1건당 4점 감점으로, 부패사건이 없는 기관은 만점											
	※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요구한 건은 적용 사례로 인정											
	※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패사건에 대해 이전 기준 적용 시, 실제 적용한 징계양정기준을 증빙자료로 첨부(내부지침은 불인정)											
	③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20)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포함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시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 첨부한 경우												
- 자료 입력(제출) 기한* 미준수												
* 공문에 기재된 입력 기한 기준												
<table><tr><th>구 분</th><th>배점</th></tr><tr><td>▪ 자료입력 누락(건당)</td><td>-1</td></tr><tr><td>▪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건당)</td><td>-1</td></tr><tr><td>▪ 입력기한 미준수</td><td>-1</td></tr></table>					구 분	배점	▪ 자료입력 누락(건당)	-1	▪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건당)	-1	▪ 입력기한 미준수	-1
구 분	배점											
▪ 자료입력 누락(건당)	-1											
▪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건당)	-1											
▪ 입력기한 미준수	-1											
- 해당 사항이 없는 기관은 만점												
비 고												

평가영역

B. 실행

평가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과제

3-1. 청탁금지 제도운영

배점

100

평가방법

① 청탁금지법 교육(70)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10)

※ 소속 공직자등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 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 수립 시 인정

- 소속기관 포함 전 공직자등 대상 1시간 이상 청탁금지법 관련 집합 교육 실시(6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청탁금지법 교육 이수실적(간부) ※ 부서장급 이상 간부 직원 교육 이수비율	100% 교육실시	30
	80% 이상 교육실시	25
	60% 이상 교육실시	20
	60% 미만 교육실시	0
② 청탁금지법 교육 이수실적(직원) ※ 현원 기준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 교육 이수비율	100% 이상 교육실시	20
	90% 이상 교육실시	15
	80% 이상 교육실시	10
	70% 이상 교육실시	5
	70% 미만 교육실시	0
③ 취약분야 교육 이수실적(인사, 계약) ※ 인사, 계약담당 직원 교육 이수비율	100% 교육실시	10
	80% 이상 교육실시	5
	80% 미만 교육실시	0

※ '18.10.31. 기준 공직자등 현원 목록 및 공직자등 별 교육 이수실적을 엑셀자료 형식으로 제출

※ 원칙적으로 집합교육 실시, 불가피한 사유소명 시 사이버교육 실적 인정 (단, 부서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사이버교육 실적 인정 불가)

※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 교직원 포함

② 청탁금지제도 홍보 등(30)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개선(20)

세부 평가지표		배점
공공기관 정책고객,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인식, 시행효과 및 기관 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별첨 설문조사 서식을 참고하여 기관 유형에 맞춰 설문 실시	설문조사 실시	10
우수사례 홍보 및 취약분야 개선 등 설문조사결과 활용 여부	설문조사 결과 활용	10

※ 설문조사 예시

• 공공시설 예약, 병원 진료순서, 비행기·철도 좌석 예약관련 청탁관행 변화 설문조사

• 퇴직 공직자와 재직 공직자의 유착관계 및 청탁관행 변화 설문조사

• 학교 차지·청탁 및 각종 계약·조달 관련 청탁관행 변화 설문조사 등

-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10)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 실적 ※ 홈페이지·기관지, 포스터·리플릿, 캠페인, 보도자료 배포 등 ※ 설문결과 홍보실적을 중복 제출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 홍보계획, 지출결의 등 평가기간('17.11.1.~'18.10.31.) 동안 시행한 공문으로 실적 증빙	홍보실적 7건 이상	10
	홍보실적 5건 이상	5
	홍보실적 3건 이상	3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탁금지 제도운영		배 점	100												
평가 방법	○ 부정청탁 관련 내역 공개(가점, 5)															
	-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등과 부정청탁 관련 상담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2)															
	-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의 내용 및 소속 기관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3)															
	<table><tr><th>구분</th><th>공개내용</th><th>비고</th></tr><tr><td>청탁내용</td><td>·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td><td></td></tr><tr><td>조치사항</td><td>·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td><td></td></tr><tr><td>처분사항</td><td>· 징계처분,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td><td></td></tr></table>				구분	공개내용	비고	청탁내용	·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조치사항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처분사항	· 징계처분,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구분	공개내용	비고													
청탁내용	·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조치사항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처분사항	· 징계처분,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 부정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개																

평가영역

단위과제

B. 실행

평가부문

3. 청렴문화 정착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① 청렴교육 강사 양성(20)

-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 실적

구분	기관 정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3,000미만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6,000명 이상 ~ 8,000명 미만					8,000명 이상~			
강사 수	1	2	1	2	3	1	2	3	4	1	2	3	4	5	1~2	3~4	5~6	7명이상
배점	10	20	10	15	20	5	10	15	20	4	8	12	16	20	5	10	15	20

※ ‘16~’18년도에 청렴연수원의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를 합한 실적

※ 청렴연수원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가 평가기간 내 퇴직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

② 반부패·청렴교육 이수(30)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전 직원 정원

×100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90% 이상	30
80%이상~90%미만	24
70%이상~80%미만	18
60%이상~70%미만	12
50%이상~60%미만	6

※ 집합교육 운영 시 강사는 ①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이수자), ②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③해당 분야 전문가(교수·법률전문가·반부패 업무 3년이상 경력자 등)를 활용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합산 가능) 청렴교육을 진행한 경우 인정

※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 파악을 위해 직원 현원의 명단과 교육 시기 등을 엑셀 자료 형식으로 제출

③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50)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고위공직자 정원

×100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0	40%이상~50%미만	20
80%이상~90%미만	44	30%이상~40%미만	14
70%이상~80%미만	38	20%이상~30%미만	8
60%이상~70%미만	32	20% 미만	0
50%이상~6%미만	26		

※ 전 직원 대상 교육에 고위직이 참석한 경우는 불인정

※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 파악을 위해 고위공직자 현원의 명단과 교육 시기 등을 엑셀자료 형식으로 제출

평가방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국공립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50) ■ $\frac{\text{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text{학과장 이상 교원 인원}} \times 100$ * 소수점 절삭 <table> <tr> <td>구 분</td> <td>배점</td> <td>구 분</td> <td>배점</td> </tr> <tr> <td>50% 이상</td> <td>50</td> <td>20%이상~30%미만</td> <td>20</td> </tr> <tr> <td>40%이상~50%미만</td> <td>40</td> <td>10%이상~20%미만</td> <td>10</td> </tr> <tr> <td>30%이상~40%미만</td> <td>30</td> <td>10% 미만</td> <td>0</td> </tr> </table>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 (공공의료) 진료과장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50) ■ $\frac{\text{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text{진료과장 이상 의사 인원}} \times 100$ * 소수점 절삭 <table> <tr> <td>구 분</td> <td>배점</td> <td>구 분</td> <td>배점</td> </tr> <tr> <td>50% 이상</td> <td>50</td> <td>20%이상~30%미만</td> <td>20</td> </tr> <tr> <td>40%이상~50%미만</td> <td>40</td> <td>10%이상~20%미만</td> <td>10</td> </tr> <tr> <td>30%이상~40%미만</td> <td>30</td> <td>10% 미만</td> <td>0</td> </tr> </table>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실적(가점, 5) <table> <tr> <td>세부 평가지표</td> <td>배점</td> </tr> <tr> <td>각급 기관의 기본강사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또는 강의역량향상과정 이수</td> <td>5</td> </tr> </table>				세부 평가지표	배점	각급 기관의 기본강사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또는 강의역량향상과정 이수	5													
세부 평가지표	배점																			
각급 기관의 기본강사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또는 강의역량향상과정 이수	5																			
※ '18년도에 이수한 실적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공모전 수상(가점, 10) <table> <tr> <td>구 분</td> <td>배점</td> </tr> <tr> <td>① 사연·수기, 소설, 단편영화, 강의, 강연 분야에서 입선 이상 수상</td> <td>10</td> </tr> <tr> <td>② 강의, 강연 분야 본선 진출</td> <td>5</td> </tr> </table>				구 분	배점	① 사연·수기, 소설, 단편영화, 강의, 강연 분야에서 입선 이상 수상	10	② 강의, 강연 분야 본선 진출	5											
구 분	배점																			
① 사연·수기, 소설, 단편영화, 강의, 강연 분야에서 입선 이상 수상	10																			
② 강의, 강연 분야 본선 진출	5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비고	- 청렴교육 강사양성 실적 및 이수율 관련 정원기준(2018. 10. 31. 기준)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정원(계약직 포함) 합계 ※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 교육부의 경우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 대학 및 국공립 병원의 경우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 외교부의 경우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 -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관련 강사 인정 기준 ·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 등) 전·현직 교수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한 실적은 인정 불가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고위공직자 인원 산정 시 직제상 정원을 적용(2018.10.31. 기준) ※ 현원이 정원과 상이할 경우 현원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한 집합교육만 인정 ※ 단, 고위공직자 총 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차상위 직급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 (예시 : A부처 고위공무원단 이상 인원 총 22명일 경우, 과장급(50명)을 포함하여 청렴교육 운영 시 인정) ※ 또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에 고위직이 참석한 경우 또는 청렴유적지 방문 및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되나, 기관장 또는 내부강사를 활용한 교육 실적도 인정 · 교육시간 : <u>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u>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교육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배를 청렴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 교육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 되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장 대상 교육은 소속 교육청에서 진행 협조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 점	100
비고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 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진료과장(학과장) 이상 의사(교원)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계획의 일정 또는 행사명에 청렴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 되어 있어야 실적 인정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합산 가능)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50)											
	- 부패신고, 공익신고 집합교육 각 1회 이상 실시를 보통으로 평가											
	- 부패·공익신고 모두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매우 우수로 평가, 둘 중 하나만 우수사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우수											
	* 기관의 업무 특성상 우수사례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가 한정되어 부패·공익 중 한 분야의 교육만 가능할 경우, 그 분야의 교육을 다각도로 실시한 경우 매우 우수											
	<table><tr><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실시</td></tr><tr><td>50</td><td>40</td><td>30</td><td>0</td></tr></tabl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50	40	30	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50	40	30	0								
	※ 교육 시행 충실도,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 (우수사례)											
	▶ 부패 : 사업설명회 또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 부패신고, 보호보상 교육 실시, 법정 의무교육 등에 부패신고, 보호보상 교육 반영											
	▶ 공익 : 관내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등(본부 직원 외에 지청, 지사 직원 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교육을 실시한 경우)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20)												
- 기관 보유매체에 ①영상물 표출, ②포스터·리플릿 배포, ③공익신고 상시 배너 연계, ④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⑤기관지 홍보 ⑥캠페인 등												
※ 위원회에서 제공한 홍보물을 기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위의 예시 중 4가지 이상 홍보를 실시한 경우 우수(기관별 보유 홍보 매체가 상이하므로 기관 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 하여 평가)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실시</td></tr><tr><td>20</td><td>10</td><td>0</td></tr></table>				우수	보통	미실시	20	10	0			
우수	보통	미실시										
20	10	0										
※ (우수사례) 캠페인 및 공모전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개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우수사례 발굴 홍보, 민간협업 등												

(심사기획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보호보상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③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30)																
	- 기관 홈페이지(메인면)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상시배너 설치·연계 협조(10)																
	<table><tr><td>실적</td><td>1/4분기 부터 연계</td><td>2/4분기 부터 연계</td><td>3/4분기 부터 연계</td><td>4/4분기 부터 연계</td><td>미연계</td></tr><tr><td>배점</td><td>10</td><td>8</td><td>6</td><td>4</td><td>0</td></tr></table>					실적	1/4분기 부터 연계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미연계	배점	10	8	6	4	0
	실적	1/4분기 부터 연계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미연계											
	배점	10	8	6	4	0											
	※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보낸 게시요청 공문과 프린트스크린 사진(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전체 캡처) 등 증빙자료를 제출(3월, 6월, 9월, 10월 각 10일까지 문서로 신고센터에 제출)																
	- 기관 자체 홍보매체(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를 이용한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 등 협조 공문 요청에 대한 홍보 실적(20)																
	*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보호·보상 홍보자료(리플릿, 웹툰, 카드뉴스 등) 제작·배포																
	※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와 홍보자료 제작·배포 실적이 동시에 있는 경우 매우 우수,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보통(홍보콘텐츠의 다양화 등에 따라 가점)																
	<table><tr><td>우수</td><td>보통</td><td>미실시</td></tr><tr><td>20</td><td>10</td><td>0</td></tr></table>					우수	보통	미실시	20	10	0						
우수	보통	미실시															
20	10	0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실적(가점, 5)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실적이 있는 경우(a) (예시)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책임감면·신분보장 실적, 신고자의 요청에 따른 전보·전직 등 인사교류, 부패신고자 채용 실적 등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b)																	
-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상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규정’ 반영 여부(c)																	
*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수정본)」(’17.12.18 배포) 참고																	
*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서는 보호제도만 안내하여도 무방하며, 별지 서식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가능																	
<table><tr><td>구 분</td><td>배점</td></tr><tr><td>(a)+(c), (b)+(c) 혹은 (a)+(b)+(c)의 경우</td><td>5</td></tr><tr><td>(a) 혹은 (b) 실적만 있는 경우</td><td>4</td></tr><tr><td>(c) 실적만 있는 경우</td><td>1</td></tr></table>					구 분	배점	(a)+(c), (b)+(c) 혹은 (a)+(b)+(c)의 경우	5	(a) 혹은 (b) 실적만 있는 경우	4	(c) 실적만 있는 경우	1					
구 분	배점																
(a)+(c), (b)+(c) 혹은 (a)+(b)+(c)의 경우	5																
(a) 혹은 (b) 실적만 있는 경우	4																
(c) 실적만 있는 경우	1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인사규정 등 채용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규정 반영·실시 및 취업제한 안내 규정 반영(가점, 5)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반영 및 채용 공고문 등에 명시 ※ ’16.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확대된 취업제한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재검토 후 미흡 시 개정 필요 ※ 규정 반영 및 채용공고문 등에도 1회 이상 명시되어야 점수 인정(규정만 반영하고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점수 미부여) - 공공기관 내규 등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 형식은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 (예시) 제○○조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은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table><tr><td>구분</td><td>취업제한 규정 반영·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반영</td><td>취업제한 규정만 반영·실시</td><td>취업제한 안내 규정만 반영</td><td>취업제한 규정 미반영·미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미반영</td></tr><tr><td>배점</td><td>5</td><td>3</td><td>2</td><td>0</td></tr></table>				구분	취업제한 규정 반영·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반영	취업제한 규정만 반영·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만 반영	취업제한 규정 미반영·미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미반영	배점	5	3	2	0
	구분	취업제한 규정 반영·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반영	취업제한 규정만 반영·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만 반영	취업제한 규정 미반영·미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미반영									
	배점	5	3	2	0									
○ 부패,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처리 우수(가점, 5)														
<table><tr><td colspan="2">구 분(건당)</td><td>배점</td></tr><tr><td>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우수</td><td>▪ 이첩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확정된 처분에 대해 일차 통보 후 소송·재판 등 최종 처분 완료 후 조사 결과 추가 통보</td><td>1</td></tr></table>				구 분(건당)		배점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우수	▪ 이첩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확정된 처분에 대해 일차 통보 후 소송·재판 등 최종 처분 완료 후 조사 결과 추가 통보	1					
구 분(건당)		배점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우수	▪ 이첩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확정된 처분에 대해 일차 통보 후 소송·재판 등 최종 처분 완료 후 조사 결과 추가 통보	1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1. 청렴 개선 효과									
단위 과제	청렴 개선 효과			배점	100							
평가 방법	1-1 청렴도 개선 실적(7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70점 ▪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58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58점 ▪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46점 ※ 단, 2018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은 70점, 미 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1-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30)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평가 <table><tr><td>1회 접근, 팝업창 등</td><td>2회</td><td>3회</td><td>4회 이상</td></tr><tr><td>30</td><td>26</td><td>22</td><td>18</td></tr></table> -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18년 청렴도 측정 미 실시 기관은 시책평가 결과 공개만 평가 - 편법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결과 확인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 평가 시 페널티 부여 ※ 권익위에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 예정					1회 접근,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30	26	22
1회 접근,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30	26	22	18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40) - 청렴 파트너 기관 간 업무 컨설팅, 우수자료 공유 등 반부패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동일기관과 협력 시 적용)
	▪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 간 업무회의,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청렴 클러스터 실적 제외)			10	20
	▪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2	10
	▪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반부패 협력 활동 실적 인정 기준》				
	▪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간의 협력 활동만 인정(평가대상군 구분 없음) ※ 단, '17년 및 '18년 신규기관과의 활동 실적은 '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인정 (예) A기관('17년 3등급)이 B('17년 1등급)·C('17년 4등급)·D(신규기관)기관과 각각 실무자 간 업무회의를 실시한 경우 20점 부여(B·D기관) ▪ 모든 협력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동일한 기관과의 협력 활동은 활동 유형별로 최대 배점 내에서 인정 (예) A기관('17년 5등급)이 B기관('17년 1등급)과 실무자 간 업무회의 2회, 고위직 주관회의 1회,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6회 실시한 경우 30점 부여 ▪ 2개 이상의 청렴 파트너 기관과 함께 협력 활동을 하더라도 실시한 협력 활동을 기준으로 실적 인정 (예) A기관('17년 1등급)이 B('17년 3등급)·C('17년 4등급)·D('17년 5등급)기관과 함께 2차례 실무자 간 업무회의를 한 경우 2회 인정하여 20점 부여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60)															
	- 각급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책 중 효과성이 높은 시책,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 등 다른 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시책을 개발·발굴하여 제출(건당 3페이지 작성)															
	- B.2-1.부패취약분야 개선 지표의 제도개선 평가대상 세부과제수가 0개인 기관은 2건, 1개 이상인 기관은 1건 제출															
	※ 제출건수가 2개인 기관의 경우 2개 과제 각각의 점수를 평균(1건만 제출할 경우 30점 만점으로 평가)															
	< 반부패 시책 추진 10대 분야 > ①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② 고위직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 ③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④ ICT를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⑤ 전직원·시민참여 청렴 추진체계 ⑥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 ⑦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⑧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강화 ⑨ 청탁금지제도 정착 노력 ⑩ 청렴문화 확산 활동															
	< 반부패 시책 개발 평가 기준 > <table><tr><th>구 분</th><th>배점</th></tr><tr><td>▪ 기관별 시책 개발·제출(해당 건수)</td><td>10</td></tr><tr><td>▪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td><td>10</td></tr><tr><td>▪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td><td>5</td></tr><tr><td>▪ 시책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효과성·지속성</td><td>20</td></tr><tr><td>▪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td><td>15</td></tr></table>				구 분	배점	▪ 기관별 시책 개발·제출(해당 건수)	10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1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5	▪ 시책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효과성·지속성	20	▪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15
구 분	배점															
▪ 기관별 시책 개발·제출(해당 건수)	10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1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5															
▪ 시책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효과성·지속성	20															
▪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15															
	※ 시책 개발 시 참고할 부패방지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별도 제공 예정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10)															
	-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컨설팅’이란 청렴도 미흡기관의 자체 청렴실천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컨설팅 대상기관별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 지원체계, 과정에 대한 적극성, 이행의지의 피력, 반부패 위험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멘토, 멘티 기관의 활동실적에 따라 10점 이내 차등 부여)															
	○ 청렴 클러스터 활동(가점, 10)															
	※ <u>광역·기초자치단체</u> , <u>교육자치단체</u> , <u>국공립대학</u> , <u>공직유관단체</u> 해당 지표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배점</th></tr><tr><th>사례당</th><th>최대</th></tr><tr><td>▪ 청렴 클러스터 회의 개최(4개 기관 이상 참여)</td><td>1</td><td>3</td></tr><tr><td>▪ 지역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 참여기관, 프로그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 ※ 캠페인 등 1회성 이벤트 행사는 사례당 1.5점, 최대 3점</td><td>1.5~7</td><td>7</td></tr></table>			구분	배점		사례당	최대	▪ 청렴 클러스터 회의 개최(4개 기관 이상 참여)	1	3	▪ 지역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 참여기관, 프로그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 ※ 캠페인 등 1회성 이벤트 행사는 사례당 1.5점, 최대 3점	1.5~7	7		
	구분	배점														
		사례당	최대													
▪ 청렴 클러스터 회의 개최(4개 기관 이상 참여)	1	3														
▪ 지역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 참여기관, 프로그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 ※ 캠페인 등 1회성 이벤트 행사는 사례당 1.5점, 최대 3점	1.5~7	7														
※ 우수 활동사례 위주로 제출																
(인정 예시)																
- 권익위 주관 청렴 클러스터 회의 및 청렴 클러스터 참여 기관 간 회의 개최·참석																
- 지역청렴문화 실천운동 : 지역의 공직유관단체, 협력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한 축제,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문화 프로그램 진행(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할수록, 많은 기관이 참여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전국 10개 혁신도시(광주전남, 부산, 강원, 충북, 대구, 울산, 경남, 전북, 경북,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하는 경우도 인정																
- 시책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거나 본 지표 적용 기관이 아닌 기관과의 협력도 인정 (민간기업, 시민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인정 제외)																
- 타 기관 주관 청렴 행사에 별도의 역할 없이 단순 참석하는 경우																
-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실적 등은 제외																
- 본부(청·사)에서 주관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1개 사례로만 인정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 반부패시책 경연대회 참여 활동(가점, 5) - 권익위 주관 반부패시책 경연대회(12월 예정)에 진출한 작품이 있는 경우 5점 부여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기여(가점, 5) - 민간 협력사에 대한 반부패 활동 평가, 부패 유발 업체와의 계약 해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 확산 시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시책 시행 기관에 5점 부여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1. 부패사건 외부 적발
단위 과제	부패사건 외부 적발(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사건 외부적발 현황 - 2018년도 청렴도 측정 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건당)					배점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0.2	
	▪ 신고자·협조자의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0.2	
	▪ 신고자·협조자 색출(시도) 및 공개					-0.2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관련 법적 조치 미이행						
	구 분(건당)					배점	
	▪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0.2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구 불이행					-0.2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처리 미흡						
	구 분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미흡 (최대 1점 감점)		▪ 이첩(송부, 행동강령 위반 통보 포함)사건에 대한 점검 시 미회신 등 후속조치 미흡				
			-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 건당 -0.1점				
			-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미회신률			배점	미회신률		배점	
50% 이상			-1	20%이상~30%미만		-0.4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 (최대 0.5점 감점)		40%이상~50%미만		-0.8	10%이상~20%미만		-0.2
		30%이상~40%미만		-0.6	10% 미만		-0.1
		▪ 공문에 기재된 제출기간 미준수					
구 분					배점		
▪ 제출기한 미준수					-0.05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table><tr><td colspan="4">구 분</td></tr><tr><td rowspan="2">실태점검 비협조 (최대 0.5점 감점)</td><td colspan="2">·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td><td></td></tr><tr><td>구 분(건당)</td><td colspan="2">배점</td></tr><tr><td></td><td>· 자료제출 지연, 거부</td><td colspan="2">-0.1</td></tr></table>				구 분				실태점검 비협조 (최대 0.5점 감점)	·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구 분(건당)	배점			· 자료제출 지연, 거부	-0.1	
	구 분																		
	실태점검 비협조 (최대 0.5점 감점)	·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구 분(건당)	배점																
		· 자료제출 지연, 거부	-0.1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최대 1점 감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 조치 여부																		
	구 분(건당)			배점															
	①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 요구 불이행			-1															
	②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 요구 불이행			-1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 누락*		-0.2															
	관리기관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2															
	*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비위면직자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취업제한 안내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가 확인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여부(-1점)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채용 기준 미개정																			
* 예시: ①비리 연루자·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근거(업무배제, 직권면직 등) 마련, ②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가족 특별채용의 원칙적 금지(가족채용 제한), ③인사 업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명시 (이해충돌방지), ④채용규정 및 공고문 등 공개																			
○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자료 미제출(최대 0.5점 감점)																			
- 권익위에서 선정·통보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미제출																			
※ 미제출 건당 0.1점 감점																			
○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최대 0.5점 감점)																			
- 청탁방지담당관이 아닌 부서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구 분(건당)			배점																
· 청탁방지담당관의 검토 및 의견 없이 청탁방지담당관이 아닌 부서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0.05																
※ 권익위로 접수된 기관별 유권해석 요청 현황을 분석 후 평가																			
※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일 이후 시점부터 적용. 2건 이상부터 건당 감점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회원가입 및 권한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는 기존 제로미를 사용
 - * 웹 주소는 별도(부패:http://cry.acrc.go.kr, 제도:http://jedo.acrc.go.kr)
 - 기존 제로미(부패)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제도개선 권한 추가로 제도개선 기관포털 이용 가능

가. 회원가입(신규 가입)

- 웹 주소 : http://jedo.acrc.go.kr(제도개선 기관포털)
- 하단의 ‘제로미 회원가입’ 선택

회원인증

인증서 확인

①

확인

*공무원인증서(GPKI) 인증확인

확인

*공민인증서(NPKI)인증확인

※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인증서(GPKI)'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인증서(NPKI)'를 사용하면 가입 승인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회원 ID

중복체크

회원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 회원 비밀번호는 승인절차를 위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원ID와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 12자리 미만.

소속(부서)

담당업무분야

전체선택

부패/비위면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외부평가위원

반부패 경쟁력평가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제도개선기관포털

②

- ① 공무원인 경우 GPKI,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NPKI 인증
- ② 담당업무분야 중 ‘제도개선기관포털’ 선택

<권한신청 관련 참고>

업 무	사용권한 신청서	사용자 수	담당자 승인	담당부서
부패방지	공문 발송	기관별 2인	필요	심사기획과
제도개선	불필요	제한 없음	필요	제도개선총괄과

나. 권한신청(기존 제로미 회원)

○ 웹 주소 : <http://cry.acrc.go.kr>(제로미)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s navigation bar with the following items: OMI, 부패방지/행동강령,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로미 소개, and a dropdown menu for '마이제로미' (My Zero-Mi) which includes '로그인' (Login) and '회원가입' (Sign Up).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links for '공지사항' (Notice), 'Q&A', 'FAQ', and '이용안내' (Usage Guid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회원정보' (Member Information) and contai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fields: '소속(기관명)' (Affiliation), '담당업무분야' (Responsible Business Area), '성명' (Name), and '주민번호' (Resident Number). The '담당업무분야' section has several checkboxes: '부패/비위면직자' (checked), '행동강령 운영실적' (checked), '외부평가위원' (unchecked), '반부패 경쟁력평가' (checked), and '제도개선기관포털' (unchecked). A red box highlights the '제도개선 권한 승인 요청' (Request Approval for System Improvement) button, which is also circled with a red '2'. A red box with a '3' highlights a message box that says '승인요청 되었습니다.' (Approval request has been made).

① 제로미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제로미' 선택

② 담당업무분야의 '제도개선 권한 승인 요청' 선택

③ '승인요청 되었습니다.' 팝업 창

* '사용권한 신청서' 제출 없이 권익위 담당자의 승인 후 이용 가능하며, 기관별 사용자 수 제한 없음

2. 권고과제 추진계획 제출

가. 기능

- ‘제도개선 권고’ 공문을 접수한 기관 담당자가 제도개선 기관포털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및 추진계획 제출

나. 추진계획

과제이행

추진계획

권고번호

추진계획

이행실적

기관변경신청

전체 32건

[전체제부과제] : 126 건

번호	권고번호	과제명	진행상태	제출상태	권고일자	제출현황
32	2017017	기관포털 작성용	이행중	미완료	2017-03-24	0/1
31	2014025	비정상의 경상화 일괄 제도개선 ① 공공부문 특허 예산납비 균등	이행중	미완료	2014-06-30	0/1

- ① ‘과제이행’ ② ‘추진계획’ 선택하면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목록 전체가 조회*

* 권익위 출범(2008. 2. 29.) ~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 ③ ‘과제명’ 선택하면 ‘추진계획 상세 화면’ 조회

다. 추진계획 상세 및 추진계획 등록

과제이행

추진계획 상세

과제정보

양식다운로드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털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목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④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 ④ ‘권고문’ 내용 확인 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시스템에 직접 등록

○ 양식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방법

과제이행 > 추진계획 상세

⑤ 양식다운로드

■ 과제정보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탈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목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 추진계획 현황

세부과제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제출일자
국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립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	-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 첨부자료

첨부파일

⑥ 등록

⑤ '양식다운로드' 선택하여 엑셀 양식 작성

⑥ '등록' 선택하면 '의견제출 등록' 화면 조회

과제이행 > 추진계획 등록

양식다운로드 작성안내

■ 과제정보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탈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 추진계획 등록

세부과제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국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립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 추진계획서 파일 등록

추진계획서 (xls) ⑦ 찾아보기... 자료올리기...

■ 첨부파일

첨부파일 찾아보기...

⑧ 저장

⑦ '찾아보기'로 작성한 양식파일 선택 후 '자료올리기' 선택하면 '추진계획 등록' 각 항목에 자동 반영

⑧ '저장' 선택

○ 직접 입력하는 방법

과제이행 > 추진계획 상세

과제정보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탈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목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추진계획 현황

세부과제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제출일자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품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	-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첨부자료

첨부파일

목록

등록

⑤ '등록' 선택하면 '추진계획 상세' 화면 조회

과제이행 > 추진계획 등록

과제정보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탈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목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추진계획 등록

세부과제	관련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국가·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품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⑥	⑦	⑧

추진계획서 파일 등록

추진계획서 (xls) 찾아보기... 자료올리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찾아보기...

목록

저장

⑥ 관련법령 입력 ⑦추진계획 및 일정 입력 ⑧담당자 정보 입력

⑨ '저장' 선택

3. 권고과제 이행실적 제출

가. 기능

○ 기관 담당자가 제도개선 기관포털에 접속하여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

나. 이행실적

과제이행

이행실적

전체 32건 [전체세부과제] : 126 건

번호	권고번호	과제명	진행상태	제출상태	권고일자	제출현황
32	2017017	기관포털 작성용	이행중	미완료	2017-03-24	0/1
31	2014025	비정상의 장외차 일괄 제도개선 ① 공공부문 특허 예산낭비 근절	이행중	미완료	2014-06-30	0/1

① '과제이행' ② '이행실적' 선택하면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목록 전체가 조회*

* 권익위 출범(2008. 2. 29.) ~ 현재까지 해당 기관에서 권고 받은 과제

③ '과제명' 선택하면 '이행실적 상세 화면' 조회

** '제출현황' 값(A/B) : A:제출한 세부과제 수, B:권고 받은 세부과제 수

다. 이행실적 상세 및 이행실적 등록

과제이행

이행실적 상세

과제정보

양식다운로드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털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목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④ '권고문' 내용 확인 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시스템에 직접 등록

○ 양식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방법

과제이행

이행실적 상세

홈 > 과제이행 > 이행실적

⑤ 양식다운로드

과제정보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털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록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이행실적 현황

세 부과제	관련규정	조치기 한	이행 현황	이행 일자	이행실적	향후계획	불수용(추진곤란)사유	담당자	제출 일자
국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 (예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정	2015-06-30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첨부자료

첨부파일

목록

⑥ 등록

⑤ ‘양식다운로드’ 선택하여 엑셀파일 작성

⑥ ‘등록’ 선택하면 ‘이행실적 등록’ 화면 조회

과제이행

이행실적 등록

홈 > 과제이행 > 이행실적

양식다운로드 작성안내

과제정보

권고번호	2017017	과제명	기관포털 작성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록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이행실적 등록

세 부과제	관련규 정	조치기 한	이행 현황	이행 일자	이행실적	향후계획	불수용(추진곤란)사유	담당자
국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2015063	☒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행실적서 파일 등록

이행실적서(xls)

찾아보기... 자료올리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찾아보기...

목록

⑦ 저장

⑦ ‘찾아보기’로 작성한 양식파일 선택 후 ‘자료올리기’ 선택하면 ‘이행실적 등록’ 각 항목에 자동 반영

⑧ ‘저장’ 선택

○ 직접 입력하는 방법

과제이행

이행실적 상세

① 추진계획

② 이행실적

③ 기관변경신청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포탈 각서용

과제번호: 2017017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손승택

담당자 연락처: 044-200-7224

권고문: [첨부] 개선방안.hwp [500224 byte] [미리보기]

이행실적 현황

세부과제	관련규정	조치기간	이행현황	이행일자	이행실적	향후계획	불수용(추진곤란)사유	담당자	제출일자
국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 (예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정	2015-06-30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첨부자료

첨부파일

목록

⑤ 등록

⑤ '등록' 선택하면 '이행실적 등록' 화면 조회

이행실적 등록

세부과제	관련규정	조치기간	이행현황	이행일자	⑨ 이행실적	향후계획	불수용(추진곤란)사유	⑩ 담당자
국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산림사업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	⑥	20150630	⑦	⑧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행실적서 파일 등록

이행실적서(xls)

첨부파일

첨부파일

목록

⑪ 저장

⑥ 관련규정 입력 ⑦이행현황 풀다운 값* 중 하나 선택

<이행실적 등 작성시 참고>

*⑦이행현황 값	⑧이행일자**	⑨이행실적	⑨향후계획	⑨불수용(추진곤란)사유
이행중	공란	공란	입력	공란
이행완료	입력	입력	공란	공란
불수용	공란	공란	공란	입력
추진곤란	공란	공란	공란	입력

* 이행현황 값에 따라 '입력' 으로 표시된 부분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미입력

** 제출일자가 아니라 실제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한 일자(예:법령 개정 시 개정일)

⑩ 담당자 정보 입력 ⑪'저장' 선택

4. 기관변경 신청

가. 기능

- 기관 담당자가 권고과제 내용확인 후 해당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제외) 신청

나. 기관변경 신청

① '과제이행' ② '기관변경신청' 선택하면 권고과제 목록 전체 조회

③ '기관변경신청' 선택

④ 변경(제외)할 과제 선택 ⑤ 변경구분 값* 선택 ⑥ 내용입력 ⑦ 저장

* 변경 : 권고 내용이 타 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제외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는데 해당기관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관련 주의사항 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주의사항 안내



시행령 개정(1.17. 시행) 주요 내용

- ①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등(안 별표 1)
- ②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안 별표 2)
- ③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제26조)
- ④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제42조제3항)

가액 범위 조정 등 추진 배경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 지지 확산

※ 국민: '16.11월 85.3%→'17.9월 89.2%(한국행정연구원)

경제적 영향 : 긍정적 vs 부정적

※ 청탁, 접대감소 → 중·장기적으로 전체 경제에 긍정적 영향

※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 등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전문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연구분석결과 농축수산물 영향 관찰



한우·화훼 등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최소한의 보완 대책

가액 범위 조정 등 주요 내용

구 분		기 준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3만원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축의·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청렴의지 강화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현금 유사, 사용내역 추적 곤란, 부패 취약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제공 목적

가액 요건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 음식물 3만원
- 선물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목적 부정 판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목적 부정 : 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6.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구분		기존	변경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 총액 제한(150%)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 총액 제한(150%)
	국공립학교 교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 총액 제한(150%)	시간당 100만원 ※ 총액 제한 없음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40만원) ※ 총액 제한(150%)	시간당 100만원 ※ 총액 제한 없음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을 동일하게 조정

외부강의등 관련 신고 구분

신고 종류	내용	신고 시기	근거 법령
사전 신고	요청 명세(주제, 사례금 총액 등)를 미리 신고	사전에 언제든지	법 제10조제2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사후 신고	미리 신고 곤란한 경우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법 제10조제3항
보완 신고	사례금 총액 등을 알지 못하여 제외하고 신고한 후 보완하는 신고	안 날부터 5일 이내	시행령 제26조제2항

외부강의등 관련 신고 정비 등

구 분		기 준	변 경
외부 강의등 신고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 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개정 내용 관련 FAQ

Q2.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개정 내용 관련 FAQ

Q3.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관련 FAQ

Q6.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주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주는 축의금도 5만원까지만 가능한가요?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주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주는 경우에는 **5만원을 넘는 축의금, 조의금도 가능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받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 짜리 화환을 함께 받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개정 내용 관련 FAQ

Q7. 부친상을 당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을 각각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 대대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이 공직의 청렴의식 제고 계기로 작용

-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총 9만8천회의 교육이 실시되어 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고 청렴성·윤리의식이 강화

※ 타 기관유형보다 교육이 저조한 학교·학교법인 및 공직유관단체의 교육강화를 위한 자원 필요

- 다만, 과거 규율대상이 아니었던 기관에서 외부강의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다수 발생

※ 신고절차 및 방법에 대해 집중 안내하면서 절차 간소화, 신고기간 조정등 외부강의 신고제도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 공직자의 높은 자진신고로 공직사회 신뢰 제고

- 청탁금지법상 자진신고가 과거 소속 공직자 대상으로 은밀히 행해졌던 부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제공자에 대한 적발·처벌까지 이어지는 성과

※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자진신고율 : 62% (시행 6개월) → 64.7% (시행 10개월)

-법 시행 이후 처벌된 사례들 상당수가 법상 의무화된 공직자들의 자진신고로부터 비롯되어 제공자를 처벌

※ 뇌물죄가 적용된 청탁금지법 자진신고 사례

- ▲ 피의자 동거인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 제공
- ▲ 장해등급결정 민원인이 업무담당자에게 2백만원 제공

- 높은 금품수수 자진신고율은 공직사회의 자율준수 의지를 나타내주며, 공직신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 관행화된 부정청탁의 적발 · 감소에 기여

-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 (채용, 입학, 진료, 시설 이용 등)에서의 부정청탁 신고와 이를 통한 적발이 현실화

※ 부정청탁 신고 사례

- ▲ 정상적인 예약 · 순서없이 공공 골프장, 의료기관 진료 우선 이용
- ▲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

- 부정청탁은 상대적으로 신고건수가 적지만, 하급자에 대한 위법사항 묵인 청탁 사례에서 현재까지 **과태료 금액인 1천만원** 부과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 소액 금품수수라도 업무 공정성 훼손시 엄정 대처

- 법원 판례는 수사 · 조사 · 검사 · 심판 등 고도의 공정성 · 객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금품 **제공**에 대해 소액이라도 엄정하게 제재

※ (관내변호사 → 판사) 2만8천원 식대 몰래 지불 : 과태료 4배
(물품생산업체 → 물품검사 담당자) 7만 8천원 선물 : 과태료 3배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부패에 자체적으로 대응

○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이 강화되는 경향

○ 다만,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수수금액의 2~4배)하는 법원의 판례와 달리 부패금액의 1배만을 부과하는 사례 일부 발생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50만원 금품 수수 제재사례

▲ 제공자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 150만원(3배)

▲ 수수자에 대한 소속 공공기관 징계부가금 부과 : 50만원(1배)

☞ 공공기관 징계부가금 부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참고 | 금품 수수 사건 분석(과태료부과 요청 · 수사의뢰 사건)

□ 소속 공공기관의 징계부가금 부과

○ 공공기관도 소속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나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8건)

○ 징계부가금 부과시 공공기관 간 제재의 불균형 일부 발생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5배 이내 징계부가금 부과

제공자	수수자	수수액	징계부가금	수수액 배수
부하 직원	상급자	3.1만원	수수자 9.4만원	3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25만원	수수자 50만원	2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13만원	수수자 26만원	2배
직무관련자	지자체 공무원	50만원	수수자 50만원 (제공자는 과태료 150만원)	1배 (3배)
직무관련자	경찰관	66.4만원	수수자 66.4만원	1배

청탁금지법 시행 시사점

□ 양벌규정으로 기업의 청렴 · 윤리경영 강화 유도

○ 기존 형법과 달리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 감독을 소홀이 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

※ 기업 양벌 제재 사례

- ▲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예정인 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관리 공직자에게 4만 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제공자와 법인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 업체 직원이 민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현금 10만원을 동봉 업체 직원과 해당 법인에 과태료 20만원 부과

○ 향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주의 · 감독 및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반부패 활동 우수사례

- 제도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청렴 BLUE Belt 구축 -**



제도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청렴 Blue Belt 구축

2018. 3. 29.



NAVER

임 학 길 (林學吉)



- 소 속 :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 나 이 : 43세
- 직 급 : 행정주사보
- 결 혼 : 기혼(2남, 초6·초5)
- 사는곳 : 광주광역시(주말부부)

■ 태어난 곳

보 길 도



해남 땅끝



30분

전북



예송리



세연정



보고순서

1

제도를 혁신하다!

»

2

시스템을 혁신하다!

»

3

성과를 말하다!

»



1 제도를 혁신하다!

01 사회적 관심자원 별도관리

» 사회적 관심자원 별도관리란?

4급 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에 대하여
18세부터 병역의무 만료시까지의 쏜병역이행 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 합법을 가장한 불법 병역면탈 행위 시도

- '병역회피 논란' 프로골퍼 국외불법 체재
- 스티브유 병역의무부과 연령 초과 후 입국 시도



■ 병역면탈 범죄 지능화·다양화 추세

- 허위장애등록, 다한증 위장, 고의 골절, 고의 각막손상 등

■ 병역에 대한 부정적 국민인식

- 병역이행성실도 국민공감도 조사결과 100점 만점에 52.3점
(‘15.11.월 리서치 랩)

01 사회적 관심자원 별도관리

추진과정의 어려움

사회적 공감대 형성



01 사회적 관심자원 별도관리

추진 경과



01 사회적 관심자원 별도관리

이미 시작된 변화!!



금수저-연예인 병역면탈 어렵었다

중앙일보 2017-09-08 09:10 | 2017-09-08 10:23

9월부터 2만3000여명 특별관리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및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병무청이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공직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사회 도덕적 책무) 이행을 확산하고, 연예스포츠 스타들이 같은 공수로 병역을 면탈하는 부조리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고소득자(중상소득과세 표준점수 세율 중 최고 세율 적용), '아픈 몸 치료해 현역 간 ★' 등 '금수저-국대원' 박정근

단체 등록 선수

자)이다. 이들의 자단하는 것에 의원과 더불어 왔다. 병무청 크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달 관리할 병자였 그 자녀 과 체육선수들



이론 중 치료해 현역 입대한 연예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배우 김수현(오른쪽 사진) 2PM의 최혁연(중쪽 사진), '비밀선생님'의 박정근이다.

이들은 모두 위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역 입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신중히 현역관행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남다른 행보는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

동아일보

02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도입

전문 외부인사 위촉, 부패취약분야 감시/조사/평가

» 제도도입 배경



» 위촉대상



» 주요 활동



02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도입

» 위촉장 수여



» 실지감사 및 신분상 조치 심의 참여

- 기간/대상 : '17.10.16.~19.(4일간)/사회
- 감사참여 : 2명(회계사, 전직 감사관 출신)
- 감사결과

- 구내식당 · 매점 위탁운영 미흡 사례 등 새로운 사례 도

감사결과 처분 및 통보사항 명세		
구분	내용(처분)	분 야
1	총무처를 대령버스 임차운행 부적정(개선·불문)	운영지청 (청정사무관)
2	사회복무요원수련회 구내식당·매점 위탁운영 미흡 (개선·불문)	운영지청 (청정사무관)
3	물류계약 관리·감독 부적정 (개선·불문)	운영지청 (청정사무관)

2 시스템을 혁신하다!

03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사업명	병무감사 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6개월('17. 5.~'17. 10.)
총 사업비	2.2억원
수행 회사	(주) 비투엔
투입 인력	총 26 M/M (비상주포함)

03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자원흐름 전 과정을 분석, 비리/면탈 및 업무과실의
사전 예방, 조사·통제, 사후조치 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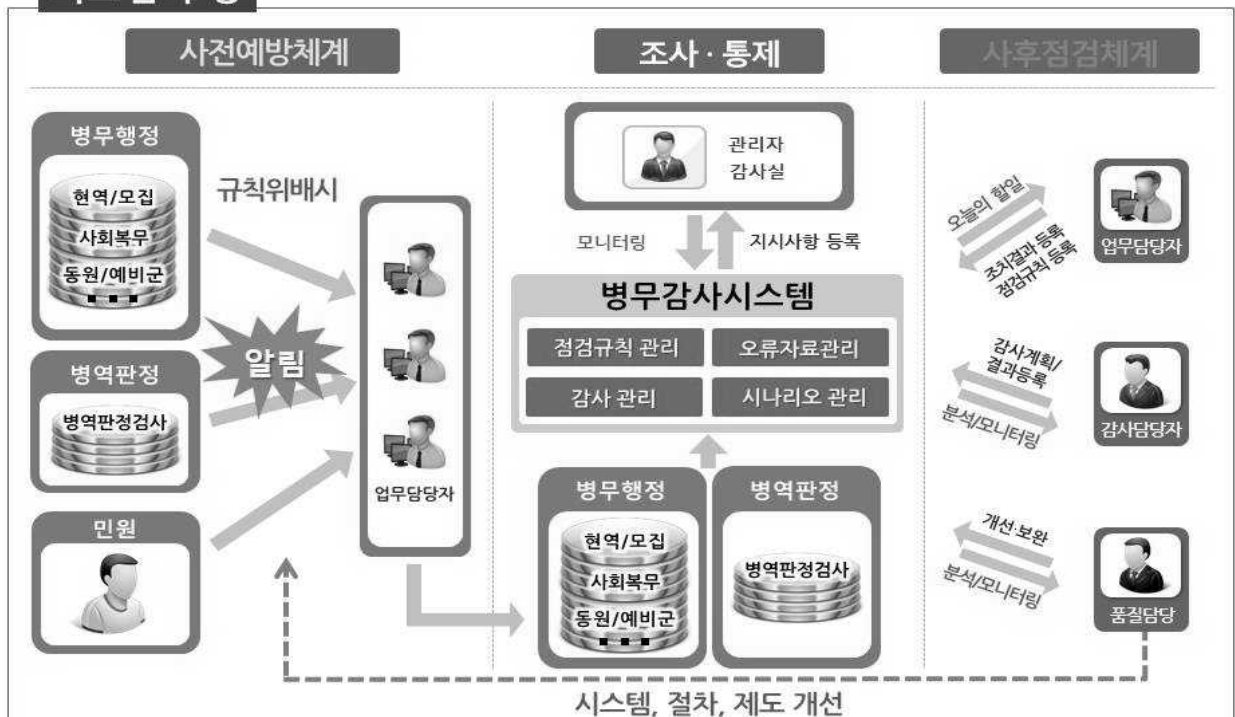
종합 감사시스템 구축



03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성



03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사전점검



정보화된 감사노하우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업무 처리시 감사지적사항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알림

✔ 시스템적 예방체계

-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을 시스템에서 예방 조치
- 업무처리시 "알림"으로 담당자 실수 방지

간편한 변경작업 ✔

- 법령/규정이 변경되어도 별도의 작업없이 적용
- 인력/시간 투입 최소화

사전
점검

✔ 실시간 알림

자원 소요 최소화 ✔

03

병무감사시스템 구축

발생오류 사후조치



감사관의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 업무오류를 추출하고 담당자가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오류의 진단/배정/조치/분석체계 구성

✔ 업무규칙의 주기적 진단

- 감사노하우를 업무규칙으로 관리하여 매일 결함 확인
- 담당자 배정 및 알림으로 신속한 조치 가능

담당자 자동 배정 ✔

- 오류 진단시 조치담당자를 자동 배정하여 불필요한 업무 제거
- 주요 발생결함, 조치상황 분석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오류
점검

✔ 신속한 조치

모니터링 체계 ✔

04 부패경보시스템 구축

» 부패경보시스템이란?

병무청의 민원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금품수수, 불친절사항 등을 카카오톡 알림톡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자동화시스템)



도입

E-mail응답방식 → 카카오톡 설문조사(2016.9월)

중간점검

운영결과 금품향응요구 응답자(69명)
전수조사, 착오응답으로 확인('17.10월)

부패
ZERO

금품요구내역 없음
(2018.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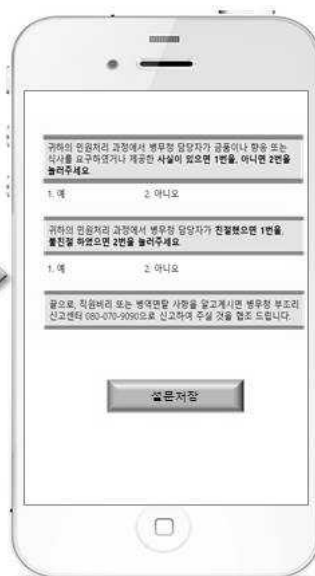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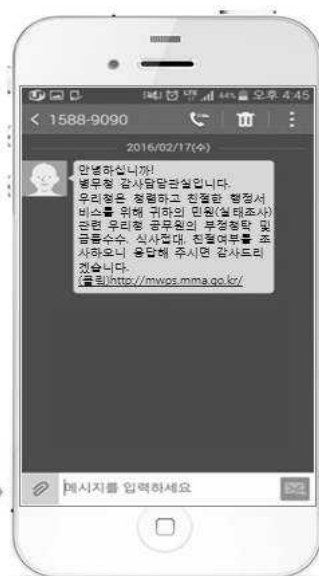


04 부패경보시스템 구축

01
설문대상자
등록

02
캠페인
등록

03
문자발송



04
결과저장
및 조회

05
설문분석,
사실조사

민원신청

병역처분변경원,
전문/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생계곤란병역감면원 등

실태조사

지정업체
복무기관

**지방청 민원담당자**

민원처리
지정업체, 복무기관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분석**

주기적 모니터링
금품 및 항응요구자 직접조사(필요시)
시스템 유지

**조사/결과보고**

응답결과 주기적 모니터링
위반사항 조사 및 결과보고



3 성과를 말하다!

05

주요성과

2017년 정부인사혁신 '대상'수상(행정안전부 주관)



내부청렴도
우수결과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7) 대상, (‘16) 동상, (‘15) 대상

2017년 민원평가 7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민원 서비스닥터팀 운영



무료치료지원사업 확대



외부청렴도
우수요인

※ 대외기관 수상내역 : 자체감사기구 발전기관(감사원), 공직윤리 제도운영 우수(인사혁신처)

05

이제는!!

청렴

Blue Belt

구축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
반칙과 특권 배제, 청렴기반 마련

사회관심자원
별도관리

청렴
국민감사관

전문성·투명성 확보
국민참여를 통한 감사기능 내실화

병무
감사시스템

병무업무 부패종합관리
반복오류 및 부패차단

부패
경보시스템

국민의 눈을 통한 외부 감시
발생 소지 발생시 즉시 알람, 조사



붙임자료

<붙임 1>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대상기관

» 총괄

합계	중앙 행정기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270	38	16	37	14	141	12	12

» 중앙행정기관 (38)

검찰청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특허청
경찰청	국방부	문화재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외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세청	기상청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광역자치단체 (16)

강원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37)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양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파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천광역시 남구	

» 교육청 (14)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141)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환경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사회보장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거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기술(주)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군인공제회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감독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구도시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구시설공단	울산시시설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대전도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적십자사	인천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KDN(주)
대한체육회	인천항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연구재단	한전KPS(주)
도로교통공단	인천환경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예탁결제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부산도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산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 국·공립대학 (12)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인천대학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12)

강원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붙임 2>

「청렴도·시책평가」 워크숍 참석자 명단

■ 숙박(男)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숙박 호실
1	(주)강원랜드	박민용	남	401(A동)
2	(주)강원랜드	장갑규	남	
3	강원대학교	정현호	남	402
4	강원도	김종렬	남	
5	경기도 김포시	김준환	남	403
6	경기도 남양주시	강병문	남	
7	경기도 수원시	김영균	남	404
8	경기도교육청	김현석	남	
9	경기도시공사	김슬기	남	405
10	경상북도교육청	양기원	남	
11	경상남도교육청	김지웅	남	406
12	경상남도교육청	서영교	남	
13	경상남도 창원시	이상포	남	407
14	경찰청	문득호	남	
15	경상북도	김덕환	남	408
16	경상북도	이학명	남	
17	고용노동부	박정범	남	409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동규	남	
19	광주광역시교육청	조희태	남	410
20	광주광역시교육청	류형수	남	
21	광주광역시	박동영	남	411
22	국가보훈처	강춘덕	남	
23	국립공원관리공단	선윤식	남	412
24	국세청	김덕영	남	
25	국토교통부	정병수	남	413
26	국토교통부	천세창	남	
27	근로복지공단	김성규	남	414
28	금융위원회	김현광	남	
29	기상청	박성균	남	415
30	기상청	이세종	남	
31	기술보증기금	박부준	남	416
32	기술보증기금	이배영	남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숙박 호실
33	대구시설공단	박재홍	남	417
34	대구시설공단	김홍구	남	
35	농촌진흥청	윤의순	남	418
36	전북대학교	백유선	남	
37	대한체육회	황선근	남	419
38	도로교통공단	이승훈	남	
39	문화체육관광부	이경환	남	420
40	방송통신위원회	박광현	남	
41	부산광역시	심성민	남	421
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재훈	남	
43	부산교통공사	손윤희	남	422
44	부산대학교	박찬일	남	
45	부산도시공사	이준석	남	423
46	부산도시공사	구경완	남	
47	부산대학교병원	박성현	남	424
48	부산시설공단	황정택	남	
49	부산항만공사	문영호	남	425
50	사회보장정보원	김갑준	남	
51	서울교통공사	박병훈	남	426
52	서울교통공사	나윤범	남	
53	서울대학교	배연호	남	427
54	서울대학교	김성원	남	
55	서울대학교병원	이남호	남	428
56	서울대학교병원	반현오	남	
57	산업통상자원부	안여선	남	429
58	서울시설공단	윤여웅	남	
59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일영	남	430
60	서울주택도시공사	장대희	남	
61	서울특별시	김민중	남	431
62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현봉	남	
63	서울특별시 관악구	손영우	남	432
6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박정용	남	
65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유민식	남	433
6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병환	남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숙박 호실
67	신용보증기금	김영록	남	434
68	안양시	김지웅	남	
69	예금보험공사	차호성	남	435
70	우체국물류지원단	장정인	남	
71	한국화학연구원	김영민	남	436
72	인천광역시	강원석	남	
73	울산시설공단	정용준	남	437
74	인천광역시교육청	오상우	남	
75	인천도시공사	서창원	남	438
76	인천도시공사	김재한	남	
77	인천대학교	손병옥	남	439
78	인천항만공사	권용석	남	
79	인천환경공단	임강혁	남	440
80	인천환경공단	정인수	남	
81	전라북도교육청	차태정	남	441
82	전라남도교육청	강인석	남	
83	전남개발공사	나상문	남	442
84	전북대학교병원	허권희	남	
85	조달청	이주현	남	501(A)
86	조달청	류용수	남	
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진호	남	502
88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김종식	남	
89	중소기업진흥공단	한동국	남	503
90	충북대학교	손성섭	남	
91	충청남도교육청	이상희	남	504
92	충청북도	백성구	남	
9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재중	남	505
94	한국고용정보원	하성룡	남	
95	한국공항공사	염규선	남	506
96	한국관광공사	허준행	남	
97	한국도로공사	박경린	남	507
98	한국도로공사	김도형	남	
99	한국농어촌공사	김형남	남	508
1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기성	남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숙박 호실
1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최지환	남	509
10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상철	남	
10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류희운	남	510
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동하	남	
1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윤명진	남	511
106	한국산업단지공단	권석무	남	
107	한국산업은행	남호철	남	512
108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원규	남	
10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형광	남	513
110	한국수력원자력	김병훈	남	
111	한국수력원자력	이철남	남	514
11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관엽	남	
11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유지훈	남	515
114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민태	남	
115	한국전기안전공사	박형준	남	516
116	한국전력거래소	김영호	남	
117	한국전력기술	이인엽	남	517
118	한국정보화진흥원	김동형	남	
119	한국콘텐츠진흥원	정호교	남	518
120	제주대학교병원	김형준	남	
121	한국환경공단	송봉석	남	519
122	한국환경공단	이강한	남	
123	한전KPS	박영길	남	520
124	한전KPS	허윤성	남	
125	해양경찰청	서광재	남	521
126	한국교육방송공사	조영석	남	
127	전라남도	권장주	남	522
128	전라남도	오경국	남	
129	전라남도	정춘환	남	523
130	경기신용보증재단	박건우	남	
131	서울시교육청	박동환	남	524
132	서울시교육청	전종무	남	

■ 숙박(女)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숙박 호실
1	강원도교육청	주은주	여	618(A동)
2	경기도 남양주시	김미선	여	
3	경기도 성남시	정현희	여	619
4	경기도 수원시	지은아	여	
5	경기도 안산시	황정임	여	620
6	경기도 용인시	한지연	여	
7	경기도교육청	조윤주	여	621
8	경상북도교육청	권정현	여	
9	경상남도 김해시	김경민	여	622
10	경상남도 양산시	안미정	여	
11	경상대학교	조민정	여	623
12	경상북도 구미시	정세황	여	
13	공무원연금공단	하주연	여	624
14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지윤	여	
15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순영	여	625
16	근로복지공단	송설희	여	
17	농협중앙회	조은옥	여	626
18	대한적십자사	김영민	여	
19	보건복지부	박혜진	여	627
20	부경대학교	송정희	여	
21	부산광역시	권영정	여	628
22	부산광역시	조귀연	여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영옥	여	629
24	부산교통공사	문미연	여	
25	부산환경공단	김민경	여	630
2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부연	여	
27	사회보장정보원	윤성진	여	631
28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해리	여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미화	여	632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호선	여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숙박 호실
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미	여	633
32	서울특별시 성동구	김민경	여	
33	경기도 안양시	이경희	여	634
34	외교부	이주현	여	
35	울산광역시	김미경	여	635
36	인천광역시서구	안남숙	여	
37	인천광역시교육청	오나영	여	636
38	인천교통공사	안세은	여	
39	인천시설공단	박혜영	여	637
40	인천시설공단	신경미	여	
41	전남대학교병원	차지연	여	638
42	중소기업중앙회	전혜숙	여	
43	한국공항공사	문명숙	여	639
44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재선	여	
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이슬	여	640
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유진	여	
47	한국국제협력단	김지영	여	641
48	한국농어촌공사	김은실	여	
4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정애	여	642
5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국화	여	
51	한국무역보험공사	최가영	여	551(A동)
5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은주	여	
53	한국시설안전공단	김고운	여	550
54	한국예탁결제원	김혜수	여	
55	한국원자력의학원	하효진	여	549
56	한국장학재단	전상미	여	
57	한전KDN	한태윤	여	548
58	강원대학교병원	박다혜	여	
59	울산광역시교육청	김경숙	여	547
60	한국교육방송공사	송춘실	여	

■ 비숙박(男, 女)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혜정	여
2	검찰청	박재호	남
3	검찰청	안윤정	여
4	검찰청	유영국	남
5	경기도	박종현	남
6	경기도	이니은	남
7	경기도	임승진	남
8	경기도	최홍규	남
9	경기도 화성시	윤근식	남
10	경상대학교병원	권나래	여
11	경상북도 포항시	김정현	남
12	공무원연금공단	전재성	남
13	공정거래위원회	정민식	남
14	공주대학교	이길복	남
15	관세청	김병진	남
16	광주광역시	최인삼	남
17	교육부	김지연	여
18	교육부	안경찬	남
19	국무조정실	주상목	남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형	남
21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은서	남
22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혜선	여
23	국민연금공단	김희홍	남
24	국민연금공단	양수현	여
25	국방과학연구소	전성주	남
26	국방기술품질원	권택만	남
27	국방부	최창덕	남
28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재신	남
2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장영	남
30	금융감독원	이윤길	남
31	농림축산식품부	이명남	남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32	농협중앙회	김윤수	남
33	대구광역시	주소진	여
34	대구광역시	황계자	여
35	대구광역시	최종화	남
36	대구광역시 달서구	최창수	남
37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진은	여
38	대구광역시교육청	전성은	여
39	대구도시공사	박노택	남
40	대전광역시	김태훈	남
41	대전광역시	유영찬	남
42	대전광역시교육청	박미순	여
43	대전광역시교육청	오소영	여
44	대전광역시교육청	전용각	남
45	대전도시철도공사	김상효	남
46	문화재청	박관수	남
47	방위사업청	정국남	남
48	법무부	박지수	남
49	법무부	손영조	남
50	산림조합중앙회	성상제	남
51	산림조합중앙회	이용광	남
52	산림조합중앙회	전은영	여
53	새만금개발청	박기병	남
54	새만금개발청	최용균	남
55	서울교통공사	이도윤	여
56	서울시 서대문구청	강윤진	여
57	서울시 서대문구청	조명아	여
5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수정	여
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박현	여
60	선박안전기술공단	김민수	남
61	세종특별자치시	전미옥	여
62	소방청	정영종	남
6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보영	여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6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신혜	여
65	수협중앙회	전재완	남
66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지영	여
67	식품의약품안전처	장문익	남
68	여성가족부	정명호	남
69	우체국금융개발원	김재찬	남
70	우체국금융개발원	박준희	남
71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용길	남
72	인천광역시 남구	이덕연	남
73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상호	남
74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은정	여
75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경화	여
76	전남대학교	문수민	남
77	전라북도	이민정	여
78	전라북도교육청	박은숙	여
79	전라북도교육청	홍진숙	여
80	전라북도교육청	김경근	남
8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봉근	남
8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성찬	남
8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현상훈	남
8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소영	여
8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금정	여
86	제주특별자치도	고은정	여
87	제주특별자치도	안경임	여
88	제주특별자치도	정은주	여
89	제주특별자치도	문영지	남
9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용준	남
91	중소기업은행	한은정	여
92	중소기업진흥공단	최 영	남
93	중소벤처기업부	강민수	남
94	중소벤처기업부	김동철	남
95	중소벤처기업부	김재균	남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96	충남대학교	박현우	남
97	충남대학교	이중섭	남
98	충남대학교병원	차은	여
99	충북대학교병원	김형순	남
100	충청남도	신현섭	남
101	충청남도	이돈우	남
102	충청남도 천안시	이영아	여
103	충청남도교육청	임현숙	여
104	충청북도 청주시	이삼표	여
105	충청북도교육청	이은희	여
106	충청북도교육청	박성우	남
107	파주시	장석진	남
108	파주시	민세준	남
109	한국가스공사	김홍대	남
110	한국거래소	최종규	남
111	한국광물자원공사	정남식	남
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동섭	남
1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부연	여
114	한국남동발전(주)	정민수	남
115	한국남동발전(주)	김용기	남
116	한국남부발전	심태현	남
117	한국남부발전	우원식	남
118	한국동서발전	김시훈	남
119	한국마사회	박웅	남
120	한국마사회	이지현	여
121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재하	남
1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홍식	남
1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선오	남
1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성훈	남
1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혁재	남
126	한국서부발전	김형덕	남
127	한국석유공사	김유탉	남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128	한국석유관리원	박진영	남
129	한국석유관리원	태주원	여
130	한국세라믹기술원	편규용	남
131	한국소비자원	엄성호	남
132	한국수자원공사	이종정	남
133	한국수자원공사	임수진	여
134	한국수출입은행	박재형	남
13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조은영	여
13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최지옥	남
137	한국에너지공단	박성우	남
138	한국에너지공단	이재철	남
139	한국에너지공단	임태연	남
14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성환	남
141	한국연구재단	김효진	여
14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여동희	여
143	한국원자력연구원	유병훈	남
14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김기현	남
14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김준기	남
146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주일	남
147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하영	여
148	한국전력공사	성준용	남
149	한국전력공사	심지은	여
150	한국전력기술	윤민아	여
151	한국지역난방공사	안홍준	남
152	한국지역난방공사	김도희	여
153	한국지역난방공사	백다연	여
154	한국철도시설공단	방소현	남
155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민혜	여
15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함영선	남
157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전태	남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승일	남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우리	여

연번	기관명	성명	성별
16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고병운	남
161	한국한의학연구원	김기현	남
16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태희	남
163	한국화학연구원	이현도	남
16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장욱	남
165	해양수산부	류동의	여
166	행정안전부	정수효	남
167	행정안전부	진종모	남
16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종한	남
169	환경부	김봉필	남
170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승용	남
171	한국국토정보공사	김덕균	남
172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정아	여
173	한국국토정보공사	박상기	남
174	경북대학교	김도형	남
175	해양환경관리공단	송복영	남
176	해양환경관리공단	김광민	남
177	해양환경관리공단	김보정	여
17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신영	남
17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승희	여
18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지현	여
181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상균	남
182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종선	남
183	한국철도공사	손인	남
184	한국철도공사	김남준	남
185	특허청	김대규	남
186	특허청	정성영	남
18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길부종	남
188	한국해운조합	김형훈	남

「청렴도 측정」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원현심 사무관 ☎ 044-200-7633 whs12@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금융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 시도(17)			
이진희 사무관 ☎ 044-200-7632 leejh79@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한국소비자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군인공제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오승욱 사무관 ☎ 044-200-7634 67120oh@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가보훈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병무청 통일부 특허청 환경부 여성가족부 기상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신규) 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24개)>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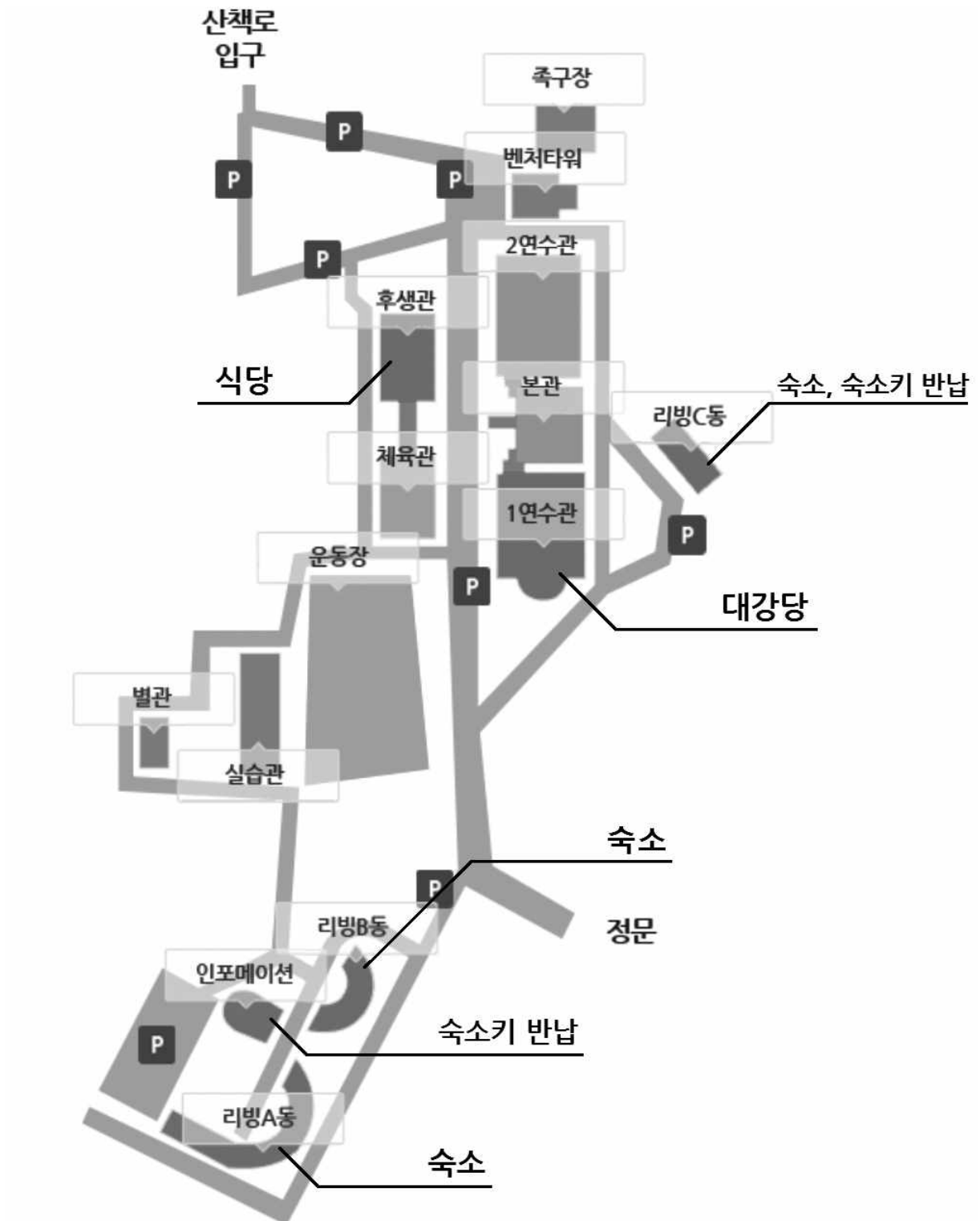
2018년 신규
공직유관단체(임시)

권익위 담당자	기관명			
박정희 사무관 ☎ 044-200-7635 rerad243@korea.k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강원랜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교육청>			
	교육청(17)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46)			
최지애 주무관 ☎ 044-200-7637 choeja@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시(75)			
홍혜연 주무관 ☎ 044-200-7630 hyen2@korea.kr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 구(69)			
한은실 주무관 ☎ 044-200-7638 diplo27@korea.kr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군(82)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SH공사 울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서울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순번	부 서	담당자	연락처	비 고
1	청렴조사평가과	원현심 사무관	044-200-7633	평가 총괄
		홍혜연 주무관	044-200-7630	
2	청렴총괄과	이범석 사무관	044-200-7617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채용비리 근절 등
		백현수 사무관	044-200-7623	청렴컨설팅
3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사무관	044-200-7160	청렴거버넌스
		이종성 주무관	044-200-7165	
4	제도개선총괄과	정희찬 사무관	044-200-7219	제도 개선
		이준민 사무관	044-200-7224	
5	부패영향분석과	이진희 주무관	044-200-7655	제·개정 법령 개선
		김동주 주무관	044-200-7662	자치법규 개선
		서현우 사무관	044-200-7660	사규 개선
6	행동강령과	박아영 주무관	044-200-7670	행동강령
7	청탁금지제도과	윤수성 주무관	044-200-7708	청탁금지제도 운영
8	청렴연수원	김일문 주무관	043-901-6142	청렴교육
9	공익심사정책과	이유경 주무관	044-200-7757	공익신고자 보호
10	심사기획과	송영희 사무관	044-200-7694	부패공직자DB
		안진희 사무관	044-200-7695	이첩사건 사후관리
		한세근 사무관	044-200-7696	비위면직자
		안병민 주무관	044-200-7697	비위면직자
		송두원 주무관	044-200-7690	부패신고 활성화
11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정병학 사무관	044-200-7582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12	보호보상과	이진아 주무관	044-200-774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13	청탁금지해석과	김재현 주무관	044-200-7649	청탁금지법 해석

KT대전인재개발원 건물배치도



MEMO



MEMO



MEMO



MEMO

